이달의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 중소벤처기업부 -

제1장 조세지원제도

1-1 내국범인 및 거주자의 납세의무

● 개념 및 용어

-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내국법인)이나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거주자)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바, 내국법인 및 사 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장부를 작성하여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과세기간동안 발생한 수입에서 지출을 제외한 소득에 세율을 적용하여 조세부담액이 결정 되는데, 조세정책적 또는 사회정책적 목적을 위해 비과세하거나 감면해 주는 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열거되어 있으므로 해당 법인 및 거주자는 신고 전에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 필요
- 내국인 등 : 다음과 같이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규정된 동일한 내용의 용어를 준용

용 어	정 의
내 국 인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
과 세 연 도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연도
과세표준 신고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
익 금	자본의 납입 등을 제외한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되는 수익
손 금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과 손실
세 액 공 제	과세소득에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감면을 공제한 후 특정목적에 의해 세법에서 규정한 액만큼 공제하는 것
세 액 감 면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조세 정책상 세액을 감면해주는 것. 각 개별세법(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해 그 요건 명시
이 월 과 세	개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법인에게 현물출자 등을 통하

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양도하는 개인에게 과세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수한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등을 양도하는 때 개인의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

1-2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창업·고용·투자·연구개발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

◉ 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

구 분	지 원 내 용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창업 후(벤처기업 확인 후) 법인세(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
취득세·등록면허세· 재산세	허세를 일정기 간동안 일정비율 감면
면제 및 감면	
창투사 등의 주식양도 차익	창투사 등이 출자한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지급받은
등에 대한 비과세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창투사 등의 벤처기업 등에의	창투사 등이 출자한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지급받은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소재 · 부품 · 장비전문기업에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소재부품 등 전문기업에 출자시 법인
공동투자시 세액공제	세액 공제
창투사 등의 소재부품장비	 창투사 등이 출자한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지급받은
전문기업 주식양도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0-2-7 1 11 E E E 11 E 11
창투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창투사 등에 출자한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과세특례	
배당소득 과세특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이 창업자 등에 출자하여 발생한 배당소득은
7 1 1 2 1 ell of 1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주식매수선택권에	비상장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연 3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천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 비과세
벤처기업주식매수선택권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벤처기업으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
행사이익 납부특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시 이익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 초과분은 분할납부 가능 벤처기업 임직원이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
1 1 1 1 2 1 2 3 1 1 1 1	
대한 과세특례 산업재산권 현물출자이익에	사시 이익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아닌 주식 양도소득으로 과세 산업재산권을 벤처기업 등에 현물출자시 과세하지 않고 출자주식 양
대한 과세특례	전립세진전을 전시기법 등에 원물을까지 되세하지 않고 물자꾸극 ㅎ 도시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방법 선택 허용
대한 목새로네	국사 경도소득세도 자세야는 정립 선택 이동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투자한 금액의 일부를 2년내 종합소득금
엔젤투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장소기 법정법무선(소립 중에 무선된 급격의 글이글 스턴에 중법소리급 액에서 공제
	^ 기계 6 계 창투사 등이 창업자 등에게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 양도시 증권거래
증권거래세 면제	에 면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 , ,
과세특례	18세 이상 거주자가 중소기업 창업 목적으로 현금 등을 60세 이상의
(창업자금 사전상속)	부모로부터 증여 받을 시 5억원 공제와 10%의 낮은 세율 적용

	┃●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등 벤처기업육성을 위해 취득한 ┃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벤처기업 · 창업보육센터지방세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및 창업보육센터용 부동산과 입주자에 대한	
과세특례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및 중과세율 적용배제	
	• 벤처기업집적시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은 중	
	과세율 적용 배제	
벤처기업과 전략적제휴를 위한 비상장 벤처기업 주주가 벤처기업과 제휴법인의 주식을 3		
비상장주식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현물출자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벤처기업 등 최대주주가 일정비율 이상을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기업매각 후 벤처기업등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중 50%이상을 양도 후 1년 이내에 벤처기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업등에 재투자 한 경우 재투자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	
	세 이연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일정한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	
등에 대한 과세특례	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	

◉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구 분	지 원 내 용		
E	1 2 1 8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일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지역·규모에 따라 법인		
0 14 4 4 2 7 2 4 7 2 2	세(소득세) 세액감면		
소기업 · 소상공인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을 납부한 경우 납부액을 소득공제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한 경		
세액공제	우 일정금액을 세액공제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성실사업자 등에 대하여 의료비, 교육비 및 월세액을 근로자와 동일		
교육비 및 월세액 세액공제	하게 세액공제 적용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기가기 크취시자 키고 가이된 자이이 가드게(되시게)시키 고게		
대한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을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카메네시 스크네시	중소기업에 대하여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접대비의 인정금액 한		
접대비의 손금산입	도 우대		
	중소기업이 사업에서 결손이 발생할 경우 직전연도 사업에 대한 법인		
결손금 소급공제에	세(소득세)를 납부하였을 경우에 결손금을 소급 공제하여 법인세(소		
따른 환급	득세) 환급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5년간 법인세(소득세) 감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5년간 법인세(소득세) 감면		
대손금의 손금산입	중소기업의 회수불능채권(대손금)을 조기에 손금 인정		
신용카드등의 사용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의 1.3%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		
따른 세액공제	제		
머리노시무드 이페레이게세	면세농산물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없이도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로 공제		

◉ 중소기업 투자촉진 지원

구 분	지 원 내 용
통합투자세액공제	내국인이 기계장치와 같은 설비자산을 구입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에
중합구자세력증제	대하여 세액공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기계장치와 같은 설비자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산을 구입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
	제와 선택 적용)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특정설비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통합투자
세액공제	세액공제와 선택 적용)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시설투자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선택 적용)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5세대 이동통신 - 5G 기지국 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선택 적용)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영상콘텐츠제작을 위하여 국내 발생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통합투
세액공제	자세액공제로 통합대상 아님)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해외진출 사업을 폐쇄 또는 축소하고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액감면	세액감면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사미트 가기가 친두에 대한 가기자가 이겨
손금산입 특례	설비투자자산 취득에 대한 감가상각 인정

●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 지원

구 분	지 원 내 용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출연금을 지급받고 구분 경리한 경우 손금 산입
기술이전 및 취득금액에 대한 과세특례	특허권 등을 이전, 취득, 대여한 경우 법인세(소득세) 감면 또는 공제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연구개발특구에 입주기업이 감면대상 업종인 경우 법인세(소득세)세액 감면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법인세 에서 공제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 법 인세에서 공제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소득세 감면
연구개발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기업부설 연구소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 중소기업의 재무개선 및 구조조정 지원

구 분	지 원 내 용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세제지원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고정자산을 통
	합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및
	취득세 감면, 소멸법인의 잔존기간에 대한 감면승계 및 미공제세액 승계
비시기침세 비취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수·양도한 사업용 고정자
법인전환에 대한	산에 대한 이월과세 및 취득세 감면, 소멸된 개인기업의 잔존기간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감면승계 및 미공제세액 승계
기시기치 무서그기키이	무역조정지원기업이 업종전환을 위하여 종전 사업용 고정자산을 처분한 경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	우 개인은 양도소득세의 감면 또는 과세이연, 법인은 3년 거치 3년 분할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익금산입

● 중소기업 지방이전 지원

구 분	지 원 내 용
수도권밖으로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이전하는	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경우 법인세(소득세) 감면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공장 등을 수도권 외 지역 이전시 법인세 감면
세액감면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도시 공장시설 건물과 대지를 양도하고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우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법인 본사 이전 양도차익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물을 양도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중소기업 공장이전에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
대한 과세특례	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또는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농공단지 입주기업	농공단지 등에 입주기업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감면
등에 대한 세액감면	ㅎㅎ한지 ㅎ해 납무기납러 그득해 데에 납전제(그득제) 삼천
농업회사법인에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또는 5년간 법인세 50% 감면 및 농
대한 세제혜택	업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이월과세 적용 등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로 본점(주사무소) 이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지방세 감면	대한 취득세 면제, 재산세 면제 및 감면, 등록면허세 면제 등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대도시에 있는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취득하
지방세 감면	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재산세 면제 및 감면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기간내 사업전
대한 지방세 감면	환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

◉ 중소기업 고용촉진 지원

구 분	지 원 내 용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청년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소득세 감면	감면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과세특례	하고, 상시근로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고용증가 인원의 사회보험료를 고용이 증가한 중소기업의 법
중소기급 사회로임표 세탁증세	인세(소득세) 공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가 복직된 경우 인건비를 기
졸업자를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업의 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기간제 근로자등을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하는 경우 기업의
따른 세액공제	소득세(법인세) 공제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관련 성과기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감면	금 설치 후 부담한 기여금을 손금으로 인정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 등에 대한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 공
세액공제	제
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임금을 증가시킨 경우 기업의 소득
근로그득 중대 세력증제	세(법인세) 공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상시근로자를 증대시킨 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공제

● 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

구 분	지 원 내 용		
기 시 사소 고 게	피상속인이 영위하던 가업을 상속인들이 승계할 수 있도록 상속세 부담을		
가업상속공제	경감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		
가업상속에 대한	가업상속에 대한 기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의 경우 일반 상속세와 달리 일정한 거치기간		
연부연납	허용하고, 분납기간을 연장하여 가업승계를 지원		
가업의 승계에	가업의 승계에 경제 활성화 및 기업경영의 영속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법인 경영자가		
(중소기업주식사전상속)	전에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사전상속)하여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증여세 과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세가액에서 공제 및 특례세율 적용			

◉ 조세특례 제한 등

구 분	지 원 내 용
최저한세에 따른 감면	최저한세 제도는 정책목적상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경우라도 세부담의 형평성,
	국민개납, 재정확보 측면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배제	하는 제도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최저한세율을 우대
조별 카이지 메케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원이 중복적으로 적용됨으로써 발생하는 과다한 조
중복지원의 배제	세지원을 적절하게 조절하기 위하여 동일 내용에 대한 중복지원을 배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산업시실 및 기업활동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고 기업의 지방이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전을 촉진하기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 대하여 일부 조세감면
배제	적용 배제

1-3 조세특례제한법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의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

◉ 개념 및 용어

- 조세특례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세율의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등의 조세감면과 특정목적을 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등의 중과세를 위한 제도
- 수도권 :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 조세감면의 유형

- ① 직접지원 : 비과세나 면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또는 경감세율의 적용과 같이 조세의 감면효과가 영구적으로 미치는 조세지원제도
 - 비과세 : 그 성질이나 국가정책상의 필요 등에 의하여 과세대상(소득·수익·행위·재산)에서 제외시키는 제도로써 비과세를 위한 별도의 절차나 별개의 행정처분이 불필요
 - 세액감면 또는 면제 :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일단 세액을 확정하고 별도의 행정행위에 의하여 해당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제도
 - 소득공제 : 각 과세연도에 정상적으로 계산한 소득금액에서 일정한 요건 및 방법에 따라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
 - 세액공제 : 각 과세연도에 정상적으로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특정한 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일정 한 요건 및 방법에 따라 세액의 일부를 공제하는 제도
 - 저율과세 : 일정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을 낮추어서 과세하는 제도
 - 분리과세 : 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지만, 일 정한 소득금액은 정책적인 목적에 의하여 종합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시켜 별도의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
- ② 간접지원 : 일정시점에 조세를 감면한 후 일정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감면한 조세를 국가가 징수 할 수 있는 과세이연을 시켜주는 조세지원제도
 - 준비금제도 : 특정한 목적에 충당하기 위한 비용을 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손금산입을 허용하여 조세를 감면하고, 준비금을 당해 목적에 맞게 지출하는 시점에는 손금불산입하여 감면된 조세를 부담시키는 제도
 - 충당금제도 : 보조금 등(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보험차익 등)을 수령한 경우에 충당금 (일시상 각충당금, 압축기장충당금 등)으로 손금산입을 허용하여 조세를 감면하고, 보조금 등을 지출하 는 시점에는 손금불산입하여 감면된 조세를 부담시키는 제도

- 분할익금제도 : 특정한 경우에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 등에 의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세 부담의 집중현상을 방지하고자 양도차익을 분할하여 익금산입하여 조세부담을 일정기간 동안 부 담시키는 제도
- 이월과세: 개인이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 개인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해당 사업용고 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법인세로 납부하는 제도
- 과세이연 : 개인이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으로 다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대체취득한 경우에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 등의 비율만큼 추후 새로 운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과세하는 제도

1-4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제도

● 개념 및 용어

- 지방세 특례란 특정산업의 진흥, 특정집단의 경제활동의 촉진 등을 위하여 지방세에 대한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 중과세 배제 등의 조세감면제도
- 고유업무 :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 수익사업: 「법인세법」제3조 제3항 및 「법인세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수익사업
- 직접사용 :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
- 수 도 권 :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과밀억제 권역 조세감면의 유형
- 비과세 : 지방자치단체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과세할 수 없으며, 법률이 해당 대상을 과세대 상에서 제외하는 제도
- 감면: 법률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특정산업의 육성지원, 농어민생활의 지원, 국민생활안정 등 특수한 사정이나 정책적인 목적을 위하여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거나 면제하는 제도
- 소득공제 : 각 과세연도에 일반적으로 계산한 소득금액에서 일정한 요건 및 방법에 따라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

제2장 중소기업의 범위

2-1 중소기업의 범위

조세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중소기업의 범위

(1) 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기준 이내이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중소기업 규모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기준

해당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평균매출액 등
①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②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③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1,500억원 이하
④ 1차 금속 제조업	C24	1,500학원 역약
⑤ 전기장비 제조업	C28	
⑥ 가구 제조업	C32	
⑦ 농업·임업 및 어업	A	
⑧ 광업	В	
⑨ 식료품 제조업	C10	
⑩ 담배 제조업	C12	
⑪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	C13	
⑫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C16	
③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④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제외)	C20	
⑤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000억원 이하
⑥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C25	1,000 국년 기아
⑰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⑧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⑲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②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800억원 이하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재생업(수도업제외)	E(E36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	Н	
33 정보통신업	J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35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	N(N76제외)	600억원 이하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000 국건 이야
38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400억원 이하
43 임대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Р	

- ※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신품의자제조업(C30393), 철도차량부품및관련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차량의자제조업, 항공기용부품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의자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로 한다.
- (2)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의 기준을 충족할 것 (실질적 독립성 기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 출자자인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 액등이 【별표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회사로서 기업집단의 범위요건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 (3) 주된 사업이 다음의 소비성서비스업이 아닐 것 (주된 사업 기준)
 - 호텔업 및 여관업
 - 주점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단란주점업
 - 그 밖에 오락 · 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소비 성서비스업에서 제외

● 중소기업 적용유예

•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①자산총액이 5천억원을 초과하거나, ②중소기업기준의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기준(별표1)을 초과하거나 ③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기준(별표2)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에 해당되어 중소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행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

- 중소기업이 ①「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②유예기 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 ③독립성기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④창업일이 속하 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의 사 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②에 따른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 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세법상 중소기업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①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기준 ②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기준(별표1) ③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기준(별표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 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기준

해당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평균매출액 등
① 식료품 제조업	C10	
② 음료 제조업	C11	
③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④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⑤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⑥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C20	
⑦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⑧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⑨ 1차 금속 제조업	C24	120억원 이하
⑩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C25	
⑪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① 전기장비 제조업	C28	
🗓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⑭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⑤ 가구 제조업	C32	
lb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 수도업	E36	
⑱ 농업,임업 및 어업	A	
⑤ 광업	В	
② 담배 제조업	C12	80억원 이하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C13	00뒤전 기약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000101 512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80억원 이하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Н	
31 금융 및 보험업	К	
32 도매 및 소매업	G	[이어이 이렇
33 정보통신업	J	50억원 이하
34 수도,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	E(E36제외)	
35 부동산업	L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0억원 이하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기계 및 장비수리업	C34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Р	10억원 이하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2 중견기업의 범위

조세지원을 위해 중견기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중견기업의 범위
- ◈ 세법상 중견기업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함

요 건	구체적 내용
규모기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주된사업기준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
	니할 것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육상호출자제한
실질독립성기준	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이 해당 기업의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직전 3년	3천억원 미만(다만,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은 5천억원 미만)
평균매출액 기준	5선국전 박진(다인, 전투 옷 천목/11월박 세액등세 내성는 5선복전 박단)

【참고】「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서의 중견기업

[※] 위 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차량부품 및 관련장치물제조업(C31202) 중 철도차량용의자제조업, 항공기영부품제조업 (C31322) 중 항공기용의자제조업의 규모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아닐 것
-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④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 총액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이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4)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③금융업, ④보험 및 연금업, ⑥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 아닐 것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아닐 것

◉ 질문과 답변

질문 1. 조세특례제한법에서의 업종은 어떻게 분류하나요?

- 답변)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함에 있어 업종의 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분류합니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합니다.
- 질문 2. 업종의 분류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나요?
- 답변) 헌법재판소는 "……업종의 분류에 관한 사전적 의미와 관련학문의 학문적 성과·통계법 제 17조 및 유엔 작성의 국제표준산업분류,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다른 개별규정 등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될 내용과 범위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법률주의 또는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질문 3. 농업과 임업은 세법상 중소기업인가요?

답변) 농업과 임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종전 세법에서는 농업 중 작물 재배업만이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였고 임업은 비록 중소기업규모기준을 충족하였다고 하여도 세법에서 중소기업 해당업종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세법상으로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세법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업종열거를 중소기업기본법과 일치시키는 등 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16.12.31.이전에는 농업 중 작물재배업만이, 임업은 세법상 중소기업이 아니었으나, 2017.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농업 및 임업도 중소기업규모기준에 해당한다면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질문 4. 기업이 둘 이상의 업종(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업종 또는 사업을 겸영(兼營)하면 평균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 을 주된 업종으로 보거나,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간주합니다.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매출액 요건은 당해법인 또는 거주 자가 영위하는 사업 전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합니다. 예를 들어 의류제조업과 도 매업을 겸영하는 주식회사절세의 의류제조매출액이 90억 원, 도매매출액이 40억 원이라면 주식회사절세의 주된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은 의류제조업이 됩니다. 여기에서 주식회사절세가 소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주식회사절세의 사업 전체의 매출액은 130억(의류제조매출액 90억+ 도매매출액40억)원이 되어 의류제조업의 소기업 기준매출액 120억 원을 초과하므로 주식회사절세는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3장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3-1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일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지역·규모에 따라 법인세(소득세) 세액감면

지원 대상 및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법		매 <i>클</i> (억원			감면원	율(%)	
구분	감면업종	세부 사항	주된업종	기호	중	소		E권	수 <u></u>	E권 기
		110					중	소	중	소
	①작물재배업		농업·임업 및 어업	А	1,000	80				
	②축산업		농업·임업 및 어업	А	1,000	80				
	③어업		농업 · 임업 및 어업	А	1,000	80				
	④임업		농업·임업 및 어업	A	1,000	80				
	⑤광업		광업	В	1,000	80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1,500	120				
일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 업	C15		120				
반 업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80	_	20	15	30
종			1차 금속 제조업	C24		120				
	⑥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C28		120				
			가구 제조업	C32		120				
			식료품 제조업	C10	1,000	120				
			담배 제조업	C12		80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 조업 제외)	C13		8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 제외)	C16		80				

구	조세특례제	한법	중소기업기본법		매출 (억원			감면원	울(%)	
분	감면업종	세부 사항	주된업종	기호	중	소	수드	_{도권}	수 2	
		사임					중	소	중	소
			<i>코크</i> 스 ·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 약품 제조업 제외)	C20		12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 업	C22		8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C25	1,000	120				
			전자부품·컴퓨터·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0				
			그 밖의 기계 및 장비제조업	C29		120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C30		1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80				
			음료 제조업	C11		120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8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120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800	120				
일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 조업	C27		80				
반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80	_	20	15	30
어 종	⑦하수 · 폐기물처리(재활용포함) · 원료재생및 환경복원업		수도·하수 및 폐기물처리·원료 재생업	Е	800	30				
	⑧건설업		건설업	F	1,000	80				
	⑨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운수 및 창고업	Н	800	80				
	10출판업		정보통신업	J	800	50				
	①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 급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정보통신업	J	800	50				
	12광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600	30				
	③그 밖의 과학기 술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600	30				
	④포장 및 충전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600	30				
	⑤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농업노동자 공급업포함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600	30				
	① 출센터 및 텔 레마케팅 서비스업	3 1 11-1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600	30				

구	<u>조</u>	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팀	벜	매출 (억원	들액 이하)		감면원	율(%)	
분			주된업종	기호	중	소	수드	_{도권}	수 <u></u>	
							중	소	중	소
	① 직업기술학원	직업기술학원업, 직업능력개발훈 련 시설업	교육 서비스업	Р	400	10				
	③ 물류산업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 운송중개 · 대리및관련서비스업, 화물포장 · 검수및형량서비스업, 예선업(항만법), 도선업(도선법)	운수 및 창고업	Н	800	80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	임대업	N76	400	30				
	① 주문자상표부착 방식에 따른 수탁 생산업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800	80				
	② 자동차정비 공 장운영업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600	10				
	② 선박관리업		운수 및 창고업	Н	800	80				
	O CHUTH	여행업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 원 및 임대서비스업	N	600	30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야영장 업 관광유람선업	호텔업. 휴얏콘도미니엄업	숙박 및 음식점업	I	400	10				
일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야영장	숙박 및 음식점업	I	400	10				
반 업		운수 및 창고업	Н	800	80	_	20	15	30	
종		관광공연장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600	30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 원 및 임대서비스업	N	600	30				
	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제외)	종합유원, 일반유원, 기타유원시 설업		R	600	30				
		관광극장유흥업, 관광식당업, 관 광폔션업, 한옥체험업, 국인관광 도시민박업		I	400	10				
		도시민박업 시내순환관광업, 여객자동차터미 널시설업, 관광궤도업	운수 및 창고업	Н	800	80				
		관광사진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 비스업	М	600	30				
	②노인복지시설 운 영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	Q	600	10				
	②재가장기요양 기 관운영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	Q	600	10				
	원 전시산업 ③ 전시산업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 원 및 임대서비스업	N	600	30				

구	조	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팀	벜	매출 (억원			감면원	율(%)	
분	감면업종	세부 사항	주된업종 기호		중	소		E권	수5 S	:
							중	소	중	소
	②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운영업	 ♡ 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용역사업, ♡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 관한 사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원의 개발 및 보급사업 ⓒ에너지절약형 시설 및 기자재의 연구개발사업 		N	600	30		20	15	30
	②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 원 및 임대서비스업	N	600	30				
	❷경비 및 경호서 비스업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 원 및 임대서비스업	N	600	30				
	②시장조사 및 여 론조사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М	600	30				
	③사회복지서비스 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 비스업	Q	600	10				
일 반	③무형재산권 임대 업	지식재산임대 한정	임대업	N76	400	30				
업종	◎연구개발지원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 비스업	М	600	30				
0	❸개인 간병 및 유 사 서비스업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600	10				
	∰사회교육시설, 직 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교육 서비스업	Р	400	10				
	③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독서실 운영업 제외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600	30				
	36주택임대관리업		부동산업	L	400	30				
	③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D	1,000	120				
	☞통관 대리 및 관 련 서비스업	일반감면율의 50%를 감면	운수 및 창고업	Н	800	80				
	⑱자동차 임대업	등록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가 차지하는 비 율이 50%이상인 경우만 해당	임대업	N76	400	30				

구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팀	벜	매출 (억원		가면율(%)			
분	감면업종	세부 사항	주된업종	기호	ਨੁੰ	소	수5	E권	수 <u></u> 오	
		10					중	소	중	소
	①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G	1,000	50	_	10	5	10
도 배 능	②의료기관운영업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은 당해 수입금액에서 요양급 여비용이 80%이상 차지하 고, 당해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 비스업	Q	600	10				
	①엔지니어링사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 비스업	M	600	30	10	20	15	30
	②전기통신업		정보통신업	J	800	50				
	③연구개발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 비스업	М	600	30				
	④컴퓨터프로그래밍·시 스템 통합및관리업		정보통신업	J	800	50				
	⑤영화,비디오물 및 방 송프로그램 제작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 외	정보통신업	J	800	50				
지식	⑥전문디자인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 비스업	М	600 30					
7]	⑦오디오물 출판 및 원 판 녹음업		정보통신업	J	800	50				
반산	⑧광고업 중 광고물 문 안,도안,설계등 작성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 비스업	М	600	30				
업	⑨소프트웨어개발 및 공 급업		정보통신업	J	800	50				
	10방송업		정보통신업	J	800	50				
	①정보서비스업		정보통신업	J	800	50				
	⑫서적,잡지기타 인쇄물 출판업		정보통신업	J	800	50				
	③창작및예술관련 서비 스업	자영예술가 제외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600	30				
	④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 원 및 임대서비스업	N	600	30				

기타 내용

① 요약표

	분	감 면 율				
т	正	도·소매업, 의료업	그 외 업종			
소기업	수도권	10%	20%			
조기립	수도권 외	10%	30%			
중기업	수도권	감면배제	지식기반산업만 10%			
중기업	수도권 외	5%	15%			

- ②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①의 감면비율"에 100분의 110을 곱한 감면비율을 적용(기존 감면에 10% 추가효과)
 -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업종을 경영한 기업일 것
 -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것
 - ○성실사업자로서 일정요건을 모두 갖춘 자일 것
- ③ 감면한도
 - \circ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 1억원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times 500만원) }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 1억원

● 유의사항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등 다른 세액감면과 각종 투자세액공제등의 세액공제와 중복공 제 불가, 다만, 고용증대세제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는 중복 허용
-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므로 세법상 한도액까지 감가상각하여야 함
- 농어촌특별세는 해당 없고, 최저한세 적용

◉ 감면 배제 사유

다음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

- 법인세(소득세) 미신고에 따른 결정 및 기한 후 신고
- 과세관청의 경정 및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수정신고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미신고.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자의 미가입등
-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시행령 제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시행령 제122조 질문과 답변

● 질문과 답변

- 질문 1. 저는 도매업을 영위하는 A사업장과 제조업을 영위하는 B사업장을 운영하는 복식부기의무자 인 개인사업자입니다. A사업장의 경우 사업용계좌 신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A, B사업장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모두 받을 수 없나요?
- 답변) 사업자가 복수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만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됩니다. 다만, 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한 경우에는 두 사업장 모두 감면이 배제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질문 2. 수도권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2020년까지 매출액이 소기업 범위를 넘지 않아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아왔습니다. 2021년 매출액이 증가하여 소기업 범위를 초과하였으나 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해당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소기업으로 보고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거래처 사장의 말을 듣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예정입니다. 거래처 사장의 말이 맞는 말인가요?
- 답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해당 과세연도와 그 다음 3 개 과세연도(유예기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고 세액을 감면하나 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여 중기업으로 전환된 경우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건설업을 영위하였을 경우 중기업에 대한 특별세 액감면 15%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 3. 수도권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2021년 9월말 현물출자로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였습니다. 폐업 시 2021년 9월말까지 매출액이 45억원이고, 2021년 10~12월까지 법인의 매출액이 15억원인 경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소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던 거주자가 해당 사업장을 법인전환하는 경우 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매출액은 법인전환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을 폐업하기 까지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고, 법인으로 전환된 법인의 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매출액은 법인전환일 이후 발생한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도매업의 경우 매출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 소기업에 해당하므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환산매출액은 각각 60억원(45억원*12/9), 60억원(15*12/3)이므로 모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 질문 4. 저희 법인은 제조업으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2021년 도매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당해 법인세 신고 시 도매업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도 적용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동일한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더라도 업종별로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제조 업 부분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도매업 부분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동시에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감면의 중복적용 배제는 동일 사업연도 동일 사업장의 동일 소득에 대하여 중복적용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3-2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을 납부한 경우 납부액을 소득공제

● 지원 대상

- 소기업
- 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분기별로 3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납부하는 거주자
- 법인의 대표자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

● 지원 내용

- 공제부금 납입액과 다음의 사업(근로)소득금액별 공제금액(200~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 사업(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단,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은 제외
 - 사업(근로)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 : 500만원
 - 사업(근로)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300만원
 - ○사업(근로)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 : 200만원

소득공제액 = Min(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입액, 200~500만원)

● 유의사항

-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실제로 해당 소득을 지급받을 때 발생한 것으로 봄
- 소득을 지급받을 때 퇴직소득으로 과세
- 정당한 사유(폐업, 해외이주 등)없이 해지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

● 절차 및 제출서류

- 소득세 신고 또는 연말정산의 경우에 공제부금납입증명서를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게 제출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시행령 제80조의3

● 질문과 답변

- 질문 1. 가입 당시부터 지금까지 소기업에 해당하여 소득공제를 적용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추후 연평균매출액의 증가로 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나요?
- 답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가입 당시의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매출액이 증가하여 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 2. 본점 이외에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 연평균매출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답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단위로 연평균매출액을 산정하나 법인의 경우는 법인 단위로 연평 균매출액을 산정합니다.
- 질문 3. A법인의 대표자이며, B법인의 대표자입니다. 급여는 각각 4천만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가입 및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 답변) 두 법인 중 하나를 정하여 가입을 할 수 있으나 2016년 1월 1일 이후에 가입을 하실 경우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여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액은 개인의 총급여액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총급여액이 8천만원이어서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 질문 4. 현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이며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자입니다. 이럴 경우 두 사업장 모두 가입 및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 답변) 두 사업장 모두 가입할 수 없으며 그 중 하나를 정하여 가입을 할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두 사업장의 연평균매출액과 사업소득금액 및 총급여액을 검토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 5.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상시 근로자수는 8명이고, 연평균매출액은 15억원입니다. 2021년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가입 및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 답변) 음식점의 경우 연평균매출액이 10억원 이하여야 가능하지만 2015년말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수가 10명이하일 경우 2019년 3월 31일까지는 소기업에 해당하나 그 이후 가입 및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 질문 6. 병원의 대표자도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의료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여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병원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연평균매출액 10억원 이하'일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 7. 2017년부터 소득금액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리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6년 이전 가입자도 바뀐 공제한도를 적용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가입연도와 상관없이 개정된 공제한도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부터 달라지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 기존 가입자의 경우 공제부금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나 2016년 이후 가입자의 경우 사업(근로)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예시) 사업소득금액: 200만원, 기타소득금액: 500만원일 경우(공제부금 300만원 납입)

- 2016년 이전 가입자 소득공제액: 300만원 (종합소득금액: 700만원 한도)
- 2016년 이후 가입자 소득공제액: 200만원 (사업소득금액: 200만원 한도)
- 기존에 가입한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 총급여액에 상관없이 소득공제하였으나 2016년 이후 가입하는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기존 가입자의 경우 폐업 등의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2016년 이후 가입자의 경우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3-3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일정금액을 세액공제

◉ 지원 대상

- 2022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상생결제제도를 통하여 지급 한 금액이 있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전년대비 현금성결제 금액의 비율이 감소하지 않을 것
 - 전년대비 약속어음결제 금액이 증가하지 않을 것

상생결제제도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결제방법

-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으로부터 판매대금으로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다른 판매기업에 새로운 외 상매출채권을 발행하여 구매대금을 지급할 것
- 여러 단계의 하위 판매기업들이 구매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과 동일한 금리조건의 외상매출채권 으로 판매대금을 지급할 것
- 외상매출채권의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42)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일 것
-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될 것

현금성결제 금액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로 지급하는 금액

- 지급(상환)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신용카드업자)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환어음 및 판매대금추심의뢰서""기업구매전용 카드""외상매출 채권담보대출제도""구매론(loan)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
-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작성일 이전에는 상환청구권을 판매기 업에 행사하고 이후에는 상환청구권을 구매기업에 행사하는 것으로 약정된 "네트워크론제도"를 이용 하여 지급한 금액

● 지원 내용

•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로부터 15일 이내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 0.2%의 세액공제

•16~60일 이내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 0.1%의 세액공제

●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시행령 제6조의4

3-4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및 월세액 세액공제

성실사업자 등에 대하여 의료비, 교육비 및 월세액을 근로자와 동일하게 세액공제 적용

● 지원 대상

- 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소득이 있는 성실사업자
- 수입금액이 직전 3년 연평균수입금액의 50%를 초과할 것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전 2년이상 사업을 경영할 것
- 소득세 신고기한 현재 국세체납, 직전 3년간 조세범처벌사실, 세금계산서 등 발급 및 수령 의무 위반이 없고, 직전 3년의 세무조사결과 과소신고금액이 10%미만일 것

성실사업자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인사업자

-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한 사업자나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판매 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등
- 복식부기의무자 및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
-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금액의 3분의 2이상을 사용
- ②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44)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란?

당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다음의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

업 종	수입금액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제외),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	5억원
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및여가 관	
련서비스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가구내고용활동, 현금영수증의무발 생	
업종 중 사업서비스업	
제조업, 숙박및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	7.5억원
생업, 건설업(일부제외), 운수업및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및보험업, 상품중개업	
농업·임업및어업, 광업, 도매및소매업, 부동산매매업과 그 외의 사업	15억원

◉ 지원 내용

- 의료비 및 교육비 지출액에 대해 근로자와 동일하게 세액공제
- 월세액의 일정 금액을 근로자와 동일하게 세액공제46)

◉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의료비영수증과 의료비지급명세서(의료비 공제), 교육비납입증명서(교육비 공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월세액세액공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시행령 제117조의3, 시행규칙 제52조의2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3.9항,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

● 용어 해설

• 세액공제 : 과세소득에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특정목적에 의해 세법에서 규정한 세액만큼 공제하는 것

3-5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을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 지원 대상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구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개인	"4-4 성실사업 등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및 월세액 세액공제" 참조
법인	①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②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개인)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 사업양수도의 방법으로 법인전 환하는 경우(법인전환 후 3년이내)

● 지원 내용

•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한도:개인120만원, 법인150만원)

-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은 소득금액계산시 전액 필요경비로 공제
- 종합소득세(법인세)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을 1개월 연장

● 유의사항

-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은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로서 과소신고한 사업소득금액 등이 경정(수정)된 사업소득금액등의 10%이상인 경우 공제받은 금액을 전액추징
- 사업소득금액등이 경정된 사업자는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년간 세액공 제 배제

● 절차 및 제출서류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때 성실신고 확인비용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6, 시행령 제121조의 6
- 소득세법 제70조의 2, 시행령 제133조
- 법인세법 제60조의 2, 시행령 제97조의4

3-6 접대비의 손금산업

중소기업에 대하여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접대비의 인정금액 한도 우대

● 지원 내용

- 접대비 한도를 중소기업외의 사업자보다 우대(3,600만원)하여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를 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
-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출한 문화접대비에 대하여 추가 손금 산입

● 접대비 한도(①+②)

구분	중소기업	대기업
1	3,600만원	1,200만원
2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 100~500억원 이하 500억원 초과	적 용 률 0.3% 3천만원 + (100억초과)×0.2% 1억1천만원 + (500억초과)×0.03%

● 문화접대비 한도

- 문화접대비 지출금액에 대하여 추가 손금 산입 = Min(①, ②)
 - ① 문화접대비지출액
 - ② 일반접대비 한도액 × 20%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5조, 소득세법 제3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시햇령 제130조

접대비란 ?

접대·교제·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사업 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문화접대비란 ?

-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의 입장권 구입
- ∘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디오물의 구입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음반 및 음악영상물의 구입
-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간행물의 구입
- ∘ 「관광진흥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문화관광축제의 관람 또는 체 험을 위한 입장권·이용권의 구입
-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른 관광공연장 입장권의 구입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박람회의 입장권 구입
- ∘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 관련 강연의 입장권 구입 또는 초빙강사에 대한 강 연료 등
- 자체시설 또는 외부임대시설을 활용해 해당기업이 직접 개최하는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비
-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을 받아 진행하는 문화예술, 체육행사에 지출하는 경비
- 미술품의 구입(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백만원 이하인 것으로 한정)

3-7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중소기업이 사업에서 결손이 발생할 경우 직전연도 사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납부하였을 경우에 결손금을 소급 공제하여 법인세(소득세) 환급

● 지원 대상

• 법인세(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소득세)를 신고한중소기업

● 지원 내용

- 당해 사업에서 결손이 발생할 경우 직전사업연도에 과세한 법인세(소득세) 한도 내에서 화급
- 개인기업의 경우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부분만 환급



● 절차 및 제출서류

• 법인세(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72조, 시행령 제110조
- 소득세법 제85조의2. 시행령 제149조의2

● 용어 해설

• 결손금 : 당해연도에 속하는 필요경비가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 적용 사례

- 기업현황(A법인-중소기업)
 - ① 법인설립일 및 사업자등록일 : 2013.1.1
 - ② 2021년(제9기) 각사업연도소득금액(△결손금) : △50,000,000
 - ③ 2020년(제8기) 법인세 신고내용
 - ④ 과세표준 : 120,000,000
 - ® 산출세액: 12,000,000
 - ⓒ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8,000,000
- A법인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세액은?
 - ① 소급공제로 인한 2020년 산출세액의 감소액

2020년 산출세액 - {(2020년 과세표준 - 소급공제 결손금) × 2020년 법인세율 }

 $= 12,000,000 - \{(120,000,000 - 50,000,000) \times 10\% \}$

- = 5.000.000
- ② 2021년 환급한도액: 12,000,000 8,000,000 = 4,000,000
- ③ 2021년 환급신청액 : Min [①, ②] = 4,000,000

3-8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5년간 법인세(소득세) 감면

● 지원 대상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

사회적기업이란?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 주주나 소유자를 위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이를 위 해 이윤을 사업 또는 지역공동체에 다시 투자하는 기업

● 지원 내용

• 소득발생 후 3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그 후 2년간 50% 감면

● 감면 한도

• 1억원 + (취약계층50)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

● 감면 배제 사유

- 법인세(소득세) 미신고에 따른 결정 및 기한 후 신고
- 과세관청의 경정 및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수정신고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미신고.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자의 미가입등

●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시행령 제79조의7

● 사회적기업 문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http://socialenterprise.or.kr

3-9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5년간 법인세(소득세) 감면

◉ 지원 대상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경쟁노동시장에서 직업 활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 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 중심의 직업환경 기준을 제시하여 중증장애인 친화적(물리적,정서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 하는 사업장으로서 아래의 4가지 기준을 모두 갖춘 사업장

• (요건) 아래 4가지 기준을 모두 갖춘 사업장

구 분	내 용		
고용인원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		
고용비율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이 다음의 기준 이상		
	상시근로자수 장애인 고용인원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100명 미만 상시근로자수의 15%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상시근로자수의 30% 상시근로자수의 10%+5명		
	300명 이상 상시근로자수의 5%+20명		
시 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임금	장애인 근로자에게「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 지원 내용

• 소득발생 후 3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그 후 2년간 50% 감면

● 감면 한도

• 1억원 + (장애인52)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

● 감면 배제 사유

- 법인세(소득세) 미신고에 따른 결정 및 기한 후 신고
- 과세관청의 경정 및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수정신고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미신고.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자의 미가입등

- ◉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시행령 제79조의7
- 장애인 표준사업장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http://www.kead.or.kr 사업주지원 ⇒ 장애인표준사업장설립지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콜센터 : 1588-1519

3-10 대손금의 손금산입

중소기업의 회수불능채권(대손금)을 조기에 손금 인정

● 지원 내용

-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손금 인정 단, 부도발생일 이전의 외상매출금만 해당되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을 대손금으로 손금 인정(2020년 신설) 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제외

 ** 채무자의 무재산 등 회수불능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더라도 대손금으로 인정 받음

● 유의사항

•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유가 발생하고, 장부상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하여야 함(결산조정사항)

●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의2, 시행령 제19조의2

3-11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 지원 대상

- 신규 간이과세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업종불문)
- 소매업, 음식점업등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의 개인사업자 단,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

공제가능업종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욕탕및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사업및행정사업,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의료업,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운수업과 주차장 운영업,부동산중개업, 사회서비스업과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도로및관련시설 운영업, 자동차 제조업및자동차 판매업, 주거용 건물 수리·보수및개량업등

● 지원 내용

다음의 금액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2021년 7월 1일 이전]

- ullet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imes 2.6%
- 그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 1.3%
- 공제한도: 연간 1천만원

[2021년 7월 1일 이후]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 1.3%
- 공제한도: 연간 1천만원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란?

-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 직불카드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선불카드영수증
- 직불전자지급수단영수증, 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영수증
- 전자화폐

●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시행령 제88조

3-12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면세농산물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없이도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의제매입세액 공제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매입, 제조·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 원재료를 매입할 때 부담한 부가세는 없지만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받는 것

● 공제금액

의제매입세액 = 면세농산물등 매입금액 × 공제율

● 공제율

• 음식점업

구분	공제율
① 연매출 4억원 이하 개인사업자	9/109
② 연매출 4억원 초과 개인사업자	8/108
③ 법인사업자	6/106

• 제조업

구분	공제율
① 과자점업,도정업,제분업,떡방앗간을 운영하는 개인	6/106
② '①'을 제외한 개인 및 중소기업	4/104
③ 그외	2/102

• 기타업종

구분	공제율
과세유흥장소 및 그 외 업종	2/102

● 공제한도

구분	연간 매출액	음식점업	그 외 업종	
	2억원 이하	65%	55%	
개인사업자	2~4억원	60%	33%	
	4억원 초과	50%	45%	
법인사업자		40%		

● 절차 및 제출서류

• 부가가치세신고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

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2조. 시행령 제84조

제4장 중소기업 투자촉진 지원

4-1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 종전투자세액공제 관련제도 전면개편

내국인이 기계장치와 같은 설비자산을 구입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 지원 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내국인 (소비성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제외)
- ①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단. 토지와 건축물 등 아래의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

구 분	제외되는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
1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2	선박 및 항공기
2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
3	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② 연구·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 ③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 지원 내용

• 기본공제 : 해당 과세연도 투자한 금액 × 아래 일정율

	일반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중소기업	10%	12%
중견기업	3%	5%
일반기업	1%	3%

• 추가공제 :

[(해당 과세연도 투자금액 - 해당 과세연도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금액) × 3%] 단, 3년간 투자한 연 평균 투자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공제는 없는 것으로 하며 [(추가공제액 - 기본공제액)>0] 인 경우 기본공제액의 2배를 한도로 한다.

- 2개 과세연도에 걸쳐 투자 되는 경우 :
 - 투자되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투자액에 대해 공제 적용

(종전 투자 관련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고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투자를 개시한 경우에는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모든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

- 신성장 · 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신성장 · 원천기 술을 사업화하는 시설로서 제9조 제12항에 따른 신성장 · 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7 제6호 가목 1) 및 2)의 기술이 적용된 5세대 이동통신 기지 국(이와 연동된 교환시설을 포함한다)을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로서 「전기통신사업 회계 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같은 조 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환설비, 전송설비 및 전원설비

● 감면 세액 추징

• 해당 시설의 투자완료일부터 지원대상 건축물등과 구축물은 5년, 이외 사업용자산은 2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 공제받은 세액공제액과 함께 다음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추정

공제받은 세액 \times (공제받은 과세연도 과세표준 신고일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times 1일 10만분의 25 (연 9.125%)

●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시행령 제3조, 시행령 제21조, 시행규칙 제3조의2, 시행규칙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의2, 시행규칙 제12조의 3

4-2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기계장치와 같은 설비자산을 구입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로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선택 적용

● 지원 대상

- 2021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 중 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
 - ①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운휴중인 것 제외)
 - ② 판매시젂 정보관리 시스템설비
 - ③ 정보시스템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

-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자산 및 즉시상각을 적용받은 자산은 제외)
-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와 선박
-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
- · 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인사, 급여, 회계 등의 지원 소프트웨어, 일반 사무용 소프트웨어, 기본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제외)
- 위 사업용 자산에 해당 하더라도 운휴중에 있는 것은 제외
- 2021년 12월 31일까지 고용재난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으로 지정 선포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중고품 및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경영하는 내 국인은 투자금액의 10%(중견기업 5%) 세액공제
 - (고용위기지역: 울산광역시 동구, 전라북도 군산시,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통영시, 경상남도 고성군,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남도 영암군)
- 2021년 12월 31일까지 상생형지역일자리에 참여하면서 상생형지역일자리로 선정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중견기업 5%) 세액공제
- 2021년 12월 31일까지 규제자유특구사업자로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 에 투자하는 경우 5%(중견기업 3%) 세액공제

● 지원 내용

• 해당 기업

	중 소 기 업		중 견 기 업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1	소비성서비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 이내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66)으로 영위하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지 않을것
	의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적합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
	할 것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의 소유와 경영의
3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할 것
	숙박업 제외),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	3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 평균이 3천억원 미
	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		만인 기업일 것(2015년 최초 상장 중견기업이 3
	른 단란주점 영업),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		년내 투자하는 경우 1천5백억원 미만)

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 ④ 중견기업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는 사업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을 것. 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않아 약 함. 으로 보지 않음.

• 중소기업 투자금액의 3% (2015년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최초로 상장한 중소기업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조 제1항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투자하는 경우 4%공제)

	성장관리권역 또는 자연보전권역 내 투자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
중소기업	3%	3%
중견기업	1%	2%

●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투자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시행령 제2조, 시행령 제3조, 시행령 제4조, 시행규칙 제4조

● 질문과 답변

- 질문 1. 재무기능만 있는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올해 초 인사 및 재무 등 지원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뿐만 아니라 물류/인테리어/개발/가맹과 같은 영업업무를 포함하는 ERP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 세액감면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답변) 중소기업이 투자하는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ERP) 소프트웨어의 용도가 인사, 급여, 회계 및 재무 등 지원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와 물류, 인테리어, 개발, 가맹 등 영업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경우로서 해당 시스템의 사용용도 및 구축비용(투자금액)이 지원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와 영업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별도로 구분되는 경우, 영업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금액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ERP시스템 구축비용을 인사, 재무와 같은 지원 프로그램과 물류, 인테리어 등 영업 프로그램을 별도로 구분하여 구입하고 계상하여야 합니다.
- 질문 2. 커피전문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데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커피 제조머신, 제빙기, 오븐 등 주방장비와 냉장쇼케이스 등 비품을 구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 답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의 중소기업이 음식점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스무디 제조머신, 커피머신 및 제빙기는「조세특례제한법」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만 테이블 및 의자는 사업용자산에 해

당하지 않습니다.

- 질문 3. 동전 조작식 빨래방을 운영하기 위해 세탁기와 건조기,세제 자동투입기, 세제 자판기겸 동전 교환기를 구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 답변) 동전 조작식 세탁시설을 운영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의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의 직접적인 생산활동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세탁기, 건조기, 세제 자동 투입기, 세제 자판기 겸 동전교환기는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4-3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특정설비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로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선택 가능

● 지원 대상

- 2021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시설에 투자(중고품 및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 또는 취득(신축, 증축, 개축, 구입 포함)하는 내국인
- ①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 및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 훈련용 시설로서 기회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② 에너지절약시설투자 : 에너지절약형 시설(대가 분할상환 후 소유권 취득조건으로 에너지절약전문 기업이 설치한 경우 포함), 중수도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에너지절약시설
- ③ 환경보전시설투자 : 환경보전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무공해·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소음·진동방지시설 및 방음·방진시설, 가축분뇨의 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 감량화시설,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자원재활용시설, 해양오염방제업의 선박·장비·자재, 석유정제시설 중 탈황시설, 토양오염방지시설(권장 설치·유지·관리기준 적합시설로 한정), 청정생산시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설
- ④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 무주택 종업원(출자자인 임원은 제외한다)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과 종업원용 기숙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및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시설, 종업원의 휴식 또는 체력단련 등을 위한 시설, 종업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개설한 부속 의료기관, 직장어린이집
- ⑤ 안전설비투자 : 안전시설로 특정소방시설, 산업재해 예방시설, 광산안전시설,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강하거나 확장한 시설, 축산물위생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받거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받는 영업자 등이 설치하는 위해요소 방지시설, 내진보강 시설
- ⑥ 생산성향상시설투자 : 생산성향상시설로서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데이터에 기반하여

제품의 생산 및 제조과정을 관리, 개선하는 지능형 공장시설 포함), 첨단기술시설, 자재조달·생산계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시설, 그 밖의 유형·무형의 시설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시설

● 지원 내용

• 각 지원대상 시설에 대한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해당시설의 토지대금 제외)에 다음에 따른 공 제액을 법인세(소득세) 세액공제

지원대상 시설	세액 공제 율			
시전네당 시절	중소기업	중견기업	일반기업	
①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7%	3%	1%	
② 에너지절약시설투자	7%	3%	1%	
⑥ 생산성향상시설투자	10%	5%	1%	
③ 환경보전시설투자	10%	5%	3%	
④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10%	5%	3%	
④ 근로자복지 증진 직장 어린이집	10%	10%	10%	
⑤ 안전설비투자	10%	5%	1%	

●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시행령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2조의4 제22조의5 제22조의 6 제22조의7 제3조, 시행규칙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3조의4 제13조의5 제13조의6

● 질문과 답변

- 질문 1.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절세는 올해 초 환경보전을 위한 시설장치 2건을 신품 8천만원, 중고 품 1천만원에 구입하고자 하는데 감면 받을수 있는 세제 혜택은 어떤게 있을까요? 2021년 예상 과세표준은 5억원입니다.(종전 3년간 시설 투자 이력은 없음)
- 답변) 중소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환경보전을 위한 시설을 신규로 구비하는 경우에 환경보전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MAX (①,②) = 8,000,000원

- 환경보전 시설 투자세액공제 2021년 예상 과세표준 : 500,000,000
 2021년 예상 산출세액 : 200,000,000×10% + 300,000,000×20% = 80,000,000
 2021년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80.000,000×10% = 8.000,000
- 통합투자 세액공제 8천만원×10% + (추가 공제 = 0) = 8,000,000원

2021년 납부할 세액: 80,000,000 - 8,000,000 = 72,000,000으로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하여 추가적으로 800만원의 세액공제 효과가 있습니다.

- 질문 2. 주식회사 절세는 경북 안동시 소재 건물을 신축하면서 축열식 히트펌프77)를 설치하였으며 한국전력공사에서 지원하는 축냉설비 설치지원금을 수령하였는데 '축열식 히트펌프'가 에 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요?
- 답변) 축열식 냉난방(겸용)시설은 축열식 냉방시설에 해당하므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 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만, 축열식 히트펌프가 축열식 냉방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의 판단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하므로 매 투자시마다 확인이 필요합니 다
- 질문 3. 태양광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여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전기 생산을 위해 대형건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 한 경우 태양광 발전시설의 에 너지절약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수 있는지요?
- 답변) 내국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2항에 따라 조합법인 제외)이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재생에너지(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 질문 4. 고로 및 전기로를 통한 제철·제강·압연에 관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철근, 형 강등 다양한 철강제품을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는데 신규투자한 철강 제조설비는 조세특례 제한법 별표2의 2.가공설비 및 품질향상설비 중 마.신소재 생산설비의 (4) 「광석 또는 스크랩을 제련·정련 또는 주조하는 설비와 압연·절단·냉각·교정·직접 또는 이송하는 열 간 및 냉간 압연설비」 에 해당하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2. 마의 (4)에 열거된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 답변) 내국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2항에 따라 조합법인 제외)이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재생에너지(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4-4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로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선택 가능

◉ 지원 대상

- 2021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 및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하는 경우
 - ① 신성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연구개발한 기업이 해당 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로서 자율주행차등 미래형자동차와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등 지능정보시설, 기반소프트웨어등 차세대SW시설, 실감형콘텐츠등 콘텐츠시설, 지능형반도체센서등 차세대전자정보디바이스시설, 5G이동통신등 차세대방송통신시설, 바이오화합물등 바이오헬스시설, 신재생에너지등 에너지신산업환경시설, 고기능섬유등 융복합소재시설, 첨단제조 및 산업로봇등 로봇, 무인이동체등 항공우주시설로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공동으로 인정하는 사업용자산
 - ② 투자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이상이고, 해당 투자를 개시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전체 연구·인력개발비에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이거나 신성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해당 기업이 연구·개발하여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을 것
 - ③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할 것. (단, 중소기업은 예외)

● 지원 내용

- 투자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 * 일반기업의 경우 5% 세액공제
 - * 중견기업의 경우 7% 세액공제

●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시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

● 감면 세액 추징

-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내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받은 과세연도 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 해당 시설의 투자완료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5. 시행령 제22조의 9. 시행규칙 제13조의 8

4-5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5세대 이동통신 - 5G 기지국 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로 통합투자세액공제 와 선택 가능

◉ 지원 대상

- ①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다음의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리스투자 제외)하는 경우
 - 5G 이동통신 기지국 장비기술이 적용된 5세대 이동통신기지국(연동된 교환시설 포함)을 운영 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
 - 5G 이동통신 코어네트워크(Core Network, 기간망) 기술이 적용된 5세대 이동통신기지국 (연동된 교환시설 포함)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

● 지원 내용

• 투자금액의 2%(추가 1% 한도)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법인세 에서 세액공제

● 감면 세액 및 이자상당액 추징

•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해당 시설의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시설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에는 전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그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1일 0.025%)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추징

●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시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

●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7, 시행령 제22조의11

4-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지원 대상

2022년 12월 31일까지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영상제작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 방송된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및 오락을 위한 프로그램 및 영화의 영상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 등 영상콘텐츠 국내 발생 제작비용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 1. 오락 방송프로그램, 교양 방송프로그램 중 다큐멘터리, 텔레비전 방송된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에 따른 드라마등을 제작하는 자의 경우: 제작하는 영상콘텐츠의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3개 이상의 요건을 갖출 것 가. 작가(극본, 시나리오 등을 집필하는 자를 말한다)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나. 주요 출연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다. 주요 스태프(연출, 촬영, 편집, 조명, 미술) 중 둘 이상 분야 책임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라. 제작비의 집행 및관리와 관련된 모든 의사 결정을 담당할 것
- 2. 영화상영관에서 일정기간 연속하여 상영되는 영화를 제작하는 자의 경우: 영상컨텐츠의 실질적인 제 작을 담당하는 영화제작업자로서 위 1의 요건 중 3개 이상의 요건을 갖출 것

● 지원 내용

- 투자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영상콘텐츠가 처음으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 영된 과세연도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 * 일반기업의 경우 3% 세액공제
 - * 중견기업의 경우 7% 세액공제

●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시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6, 시행령 제22조의 10, 시행규칙 제13조의 9

4-7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해외진출 사업을 폐쇄 또는 축소하고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액감면

● 지원 대상

① 2021년 12월 31일까지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여 국외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한 사업을 하면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증설부분 소득 구분경리하는 경우만)하여 사업을 개시 한 날부터 4년 이내에 국외에서 운영하던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할 것
- * 국외에서 운영하던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할 것
- ② 2021년 12월 31일까지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부분 축소 또는 유지하면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으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을 축소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축소 확인을 받은 경우로서 그 축소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할 것

<증설의 범위>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사업장의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 위 공장 외의 사업장인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해당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 지원 내용

- 법인세(소득세) 감면
- ① 국외사업장을 양도 또는 폐쇄하는 경우(지원대상 ①에 해당)
 - 이전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간 법인세(소득세)의 100% 세액감면, 그 다음 2년간 50% 감면
 -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기산
- ② 국외사업장의 국내 부분 복귀하는 경우(지원대상 ② 및 ③에 해당) 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복귀일 이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간86) 법인세(소득세)의 100% 감면, 그 다음 2년간 50% 감면
- 관세의 감면

지원대상 ①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국내 사업장 신설 또는 창업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관세 100%(한도4억), 지원대상 ②와 ③에 해당하는 경우 50%(한도 2억원) 감면

● 감면 세액 및 이자상당액 추징

- 사업장을 이전 또는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폐쇄 또는 증설한 부분을 폐쇄하거나 법인을 해산한 경우
- 국외 사업장을 양도·폐쇄하지 않거나 감면대상 요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감면기간 중에 국외에 사

업장을 신설하거나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을 증설하여 확대하는 경우

●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감면세액계산서
-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장을 경영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외사업장을 양도했거나 폐쇄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인한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의 생산 량 축소 확인서 사본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24. 제118조의 2. 시햇령 제104조의 21. 제115조의 2. 시햇규칙 제 47조의2

4-8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업 특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설비투자자산 취득에 대한 감가상각 인정

● 지원 대상

- ①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의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격기업
 - ㄱ. 차량 및 운반구 (운수업에 사용되거나 임대목적으로 임대업에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
 - ㄴ. 선박 및 항공기 (어업·운수업에 사용되거나 임대목적으로 임대업에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
 - ㄷ. 공구, 기구 및 비품
 - ㄹ. 기계 및 장치

② ①외의 기업으로 다음의 혁신성장투자자산을 취득하는 기업

- 그. 신성장사업화시설
- ㄴ.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ㄹ. 관련법률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ㅁ. 관련법률에 따른 수도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 ㅂ. 관련법률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ㅅ.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해 투자하는 시설(데이터에 기반하여 제품의 생산 및 제조과정을 관리하거나 개선하는 지능형 공장시설을 포함한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ㅇ. 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제작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지 자재조달·생산계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시설, 그 밖의 유형·무형의 시설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시설

◉ 지원 내용

-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
 - 적용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50%(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취득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75%)을 더하거나 뺀 범위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와 신고한 감가상각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상각방법의 적용 및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을 준용
-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서 손비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계산한 감가상각대상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손금에 산입가능

● 절차 및 제출서류

- 설비투자자산을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 · 보관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및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제출
-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를 해당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제출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의3, 시행령 제25조의3, 시행규칙 제13조의8

제5장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 지원

5-1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지원 대상

•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내국인(모든 업종 가능. 단,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분에 한해 적용)

연구·인력개발비란?

- 연구·인력개발비로 인정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별표7*, 별표8에 나열된 비용 * 기존의 미래형 자동차, 인공지능 등 11개 분야 173개 기술 외 첨단소재·부품· 장비분야. 시스템반도체 설계·제조기술 등을 추가하여 12개 분야 223개 기술로 확대
-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함
-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에 지출한 금액 중 과학기술분야와 결합되 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자체 연구개발 지출액만 포함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가 인정취소 되는 경우 납세자 의 귀책사유에 따라 배제시점을 차등화 함

● 지원 내용

-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 다음의 해당하는 금액을 합(① + ②)하여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 ①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세액공제금액 = 해당 과세연도의 신성장·원처기술연구개발비× (가. + 나.)*

- * 가.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
 - 1) 중소기업의 경우 : 30%
 - 2) 그 밖의 경우 : 20%(코스닥상장 중견기업 25%)

나.

당기신성장 · 원천기술연구개발비 당기수입금액

×3 , 한도 10%(코스닥상장 중견기업 15%)

- ② ①에 해당하지 않거나, 선택하지 않은 경우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경우에는 아래 가목과 나목 중 선택하는 금액
 -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 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을 적용
-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 력개 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세액공제금액 = (해당 과세연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직전 과세연도의 일반연구·인력개 발비) ×일정비율*

- * 1) 일반기업의 경우 25%
 - 2) 중견기업의 경우 40%
 - 3) 중소기업의 경우 50%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 · 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

세액공제금액 = 해당 과세연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x 일정비율*

- * 1) 중소기업의 경우 : 25%
 - 2) 중소기업이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최초 3년간 15%, 이후 2년간 10%
 - 3) 중견기업의 경우 : 8%
 - 4) 1)부터 3)까지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당기일반연구·인력개발비 ×50%, 한도 2% 당기수입금액

공제율

공제율			중소기업			
		중소기업	제외된 후	제외된 후	중견기업*	그 외 기업
			1~3년	4~5년		
일반	당해연도	25%	15%	10%	8%	2%를
연구 · 인력	투자금액	23%	15%	10%	0%	한도로 함**
개발비용	초과금액	50%	40%	40%	40%	25%
	가 항목	30%	20% (코스닥상장중견기업 25%)			
신성장 연구 · 인력 개발비	나 항목	당기신성장동력 · <u>원천기술연구개발비</u> ×3, 한도 10%(코스닥상장중견기업 15%) 당기수입금액			기업 15%)	

- * 중견기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소비성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지 아니 할 것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충족될 것 4.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50%
- 일반연구·인력개발비와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반 연구·인력개발비와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를 각각 별도의 회계처리로 구분경리하여야 함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명세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증거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및 제10조, 시행령 제1조의 2 및 제9조,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의 2

● 용어해설

• 구분경리: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수입별로 자산과 부채 및 익금과 손금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 기장하는 것을 말함, 이는 세법상 특정사업소득에 대하여만 납세 의무를 부여하거나 특정사업소득에 대하여만 소득공제·세액감면·준비금손금산입등 조세감면혜택 을 부여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소득과 기타 사업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는 것을 말함

● R&D 사전심사 제도

- R&D 사전심사 신청제도란?
- ☞ 2020년부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국세청이 R&D 세액공제 적정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주는 제도 입니다.
- R&D 사전심사 도입효과
- ☞ 납세자는 R&D 공제여부에 대한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불복, 가산세 부과 등으로 인 한 부담이 완화되며, 과세관청은 R&D 공제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성실신고를 지원하여 납세자 친화적 조세행정 구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 R&D 사전심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	청방법	0	우편, 홈택스, 세무서 민원봉사실
신청대상		0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지출 예정 비용, 전체비용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신청 도 가능하며, 금액제한 없음
신청기한		0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전	
	제출서류	신청서	0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서
		첨부서류	0	연구개발보고서, 연구개발비 명세서, 기타 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자료

- R&D 사전심사 신청 문의는?
- ☞ 국세청 법인세과 연구개발세정지원팀, Tel. 044 204 3333~9 (우)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법인세과 연구개발세정지원팀

● 중소, 중견기업 비교

중소기업	중견기업		
○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일반연구·인력개발	○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일반연구·인력개		
비가 있는 경우 다음의 해당하는 금액을 합(① +	발비가 있는 경우 다음의 해당하는 금액을 합		
②)하여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① + ②)하여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①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 🗇 + 🗅	①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 ① + ©		
□ 당해 과세연도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 당해 과세연도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x 30%	x 20%(코스닥상장 중견기업25%)		
©.	<u></u>		
당기신성장· <u>원천기술연구개발비</u> ×3, 10% 당기수입금액	당기신성장· ×3, 10%(코스닥 <u>원천기술연구개발비</u> 상장 중견기업) 당기수입금액		
②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①, ① 중에서 선택한 금액	②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 □ 중에서 선택한 금액		
○ 총액발생기준 : 당해 과세연도 일반연구 · 인력개발 비 × 25% ○ 증가액발생기준 : (당해 과세연도 일반연구 · 인력 개발비 - 직전 과세연도 일반연구 · 인력개발비) × 50%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	① 총액발생기준 : 당해 과세연도 일반연구 · 인 력개발 비 × 8%, 중소기업제외 1~3년 15%, 4~5년 10% ① 증가액발생기준 : (당해 과세연도 일반연 구 · 인력 개발비 - 직전 과세연도 일반연 구 · 인력개발비) × 40%		

년간 일 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거나 직전 과세 연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일 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 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과세 연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 발생한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의 연평균 발생 의 개시 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 인력개발비 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①을 적용

5-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출연금을 지급받고 구분 경리한 경우 손금 산입

● 지원 대상

•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일정한 법률*에 의하여 연구개발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고 구분 경리하는 내국인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지급에 관한 일정한 법률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구분경리 사례(「법인세법」 제113조)

-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처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 할 때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각각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처리
-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은 자산·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처리
- 내국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은 자산·부채 및 손익을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처리
-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합병등기일 현재 연결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을 합병(연결모법 인을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 하는 분할합병을 포함)한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을 포함)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처리

● 지원 내용

•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지급받고 별도의 회계처리로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출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 산입

● 익금 산입

손금산입한 금액은 다음에 방법에 따라 익금산입

- 연구개발출연금등을 해당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 해당 지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 시 익금 산업
- 연구개발출연금등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 ① 감가상각자산의 경우는 감가상각시 익금에 산입하거나 처분시 남은 잔액 익금에 산입
 - ② 그 외의 자산의 경우 자산의 처분시 일시 익금 산입

● 사후 관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일시 익금 산입(합병, 분할의 경우 제외)

- 연구개발출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내국인이 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해당 연구개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 해당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전에 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출연금등익금불산입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2, 시행령 제9조의 2, 시행규칙 제7조의 3

● 용어 해설

- 손금산입 :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관련된 것을 말함(「법인세법」 제19조), 손금산입이란 손금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의미임
- 익금산입 :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함(「법인세법」 제15조), 다시 말하면, 익금이란 법인세법상 수입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세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음, 익금

산입이란 익금으로 인정을 한다는 의미임

• 감가상각 : 유형·무형자산의 공정한 비용배분을 통하여 각 회계기간의 손익을 올바르게 계산하고 이에 따라 진실한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나타내기 위하여 자산의 취득원가를 각 기간에 배분하는 절차를 말함

5-3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특허권 등을 이전, 취득, 대여한 경우 법인세(소득세) 감면 또는 공제

◉ 지원 대상

- 2021년 12월 31일까지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내국인(특수관계인 제외)에게 이전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 중견기업 : 중소기업이 아님을 전제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소유 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적합하고, 직전 3개 과세연도 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이어야 함
- 2018년 12월 31일까지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자체 연구·개발한 내국인(특수관계인* 제외)으로부터 취득하는 내국인
 - *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등*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대여하는 중소기업 * 최초로 설정등록 받 은 특허권 및 실용시안권과 기술비법

일정한 기술비법이란?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 · 개발한 것으로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

☞ 공업소유권,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용역 및「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외

일정한 기술이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술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기관을 통하여 취득하는 것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거래기관

● 지원 내용

• 이전 :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50% 세액 감면

- 취득 : 취득금액의 10%(5%*)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중소기업이 아 닌 자가 중소기업으로부터 특허권 등을 취득 시)
- 대여 :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25% 세액 감면

● 사후 관리

• 특허권 등을 이전 또는 대여 시 세액 감면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 및 직전 4개 과세연도에 특허권 등에서 발생한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권 등을 이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을 계산할 때 그 소득에서 해당 손실금액을 빾

●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 신청서와 세액공제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시행령 제11조

● 중소, 중견기업 비교

중소기업	중견기업
○ 이전 :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	○ 이전 :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
인세(소 득세)를 50% 세액 감면	인세(소 득세)를 50% 세액 감면
○ 취득 : 취득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	○ 취득 : 취득금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
세(소 득세)에서 세액공제.	세(소 득세)에서 세액공제(중소기업으로부터 특
ㅇ 대여 :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	허권등을 취 득하는 경우로 한정) *해당 과세연
세(소 득세)를 25% 세액 감면	도의 법인세(소득세) 의 10% 한도
	○ 대여 : 해당사항 없음

5-4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연구개발특구에 입주기업이 감면대상 업종인 경우 법인세(소득세)세액감면

● 지원 대상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여 해당 사업 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다음의 기업
 - ① 「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정 을 받은 첨단기술기업
 - ② 「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 제2항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등

록한 연구소기업

감면대상업종이란?

- 「생명공학육성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생명공학과 관련된 산업 (종자, 묘목생산업, 수산물부화, 종묘생산업 포함)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 스를 제공하는 산업
- 「산업발전법」제5조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산업

● 지원 내용

•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3년간 법인세 (소득세) 100% 감면, 그 후 2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 감면한도

- 다음의 금액 합한 금액 ① + ②
 - ① 관련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자산* 투자누계액 × 50%
 - * 사업용 유형자산, 건설중인 자산,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3에 따른 무형고정자산
 - ② 해당 과세연도의 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 1천5백만원(청년상시근로자 및 서비스업 2천만원)

● 사후 관리

•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 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는 경우 에는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함

●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시행령 제11조의2, 시행규칙 제8조의3

● 예규 및 판례

• 첨단기술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첨단기술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

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구개발특구 입주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92

5-5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법인세에서 공제



양도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

● 지원 대상

- 내국법인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일 경우
 - ①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 ② 양도가액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의 1.3배 이상일 것
 -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합병등기일부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합병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④ 합병법인이 승계 받은 사업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속할 것

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가 매출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
- 합병등기일까지 다음의 인증 등을 받은 중소기업
 - 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 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
 -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
 - 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 마.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정
 -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인증 등

기술가치 금액이란?(다음의 금액 중 합병법인이 선택한 금액으로 함)

- 합병등기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특허권 등을 평가한 금액의 합계액
- 양도가액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 × 1.3)

● 지원 내용

• 양도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 사후 관리

-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공제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납부
 - ①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 ② 합병법인이 승계 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 * 합병법인의 파산 또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 받은 자산 의 처분 제외
 - ☞ 이자상당액 가산액 = 익금불산입에 따른 세액의 차액 × 기간 × 0.025%

●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3, 시행령 제11조의3

5-6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 법인세에서 공제



매입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

◉ 지원 대상

• 내국법인(인수법인)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피인수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취득하는 경우(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제외)

- ① 인수법인이 주식 등을 최초 취득한 날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취득일 것
- ② 인수법인이 취득한 주식 등이 취득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고(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최대출자자로서 피인수법인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는 30%, 이하 기준지분비율),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 ③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으로부터, 취득일에 취득한 주식 등의 매입가액이 다음과 같을 것

매입가액 ≥ (취득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순자산 시가 × 1.3) × 당초지분비율 *

- * 당초지분비율 : 취득일에 취득한 주식 등이 취득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해당 주식등을 양도한 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⑤ 피인수법인이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 지원 내용

• 매입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 사후 관리

-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납부
 - ① 피인수법인의 주주 등이 인수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 ② 피인수법인이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 ③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인수법인의 피인수법인 지분비율(이하 현재지분비율)이 당초지분비율 보다 낮아지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분비율이 낮아지는 경우는 제외
 -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 16조의 3 또는 「상법」제340조의 2에 따른 주식매 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 ©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신기술사업 금융 업자,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창투조합등이 출자하는 경우(타인 소유의 주식또는 출자지분을 매입하는 경우는 제외)
- 현재지분비율이 기준지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납부

매입가액 중 기존가치금액 × (당초지분비율 - 현재지분비율) / 당초지분비율 × 10%

●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시행령 제11조의4

5-7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소득세 감면

◉ 지원 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기술자란?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사람
-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경험을 가지고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는 사람
- 단,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는 기업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 1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지 않아야 함

● 지원 내용

-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 특화선도기업등 소재·부품·장비관련 외국인기술자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은 3년간 소득세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다음 2년간 소득세의 50% 감면
-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 감면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징수할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원천징수

● 절차 및 제출서류

•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외국인 기술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기획 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신청서 를 제출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9조

5-8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기업부설 연구소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 지원 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인 것으로 한정),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2년(1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2에 따라 과학기술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인정을 받은 연구소
 - ** 1. 연구소로 신축·증축 및 대수선을 하는 경우 : 2년
 - 2. 연구소로 신축·증축 및 대수선을 하지 않는 경우 : 1년

◉ 지원 내용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를 하기의 감면세율표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

	중소	기업	중소기업 외	
감면세율	일반	신성장동력 • 원천	일반	신성장동력 • 원천
	월 U	기술용	일반 	기술용
취득세	60%	70%	35%	45%
재산세	50%	60%	35%	45%

● 사후 관리

- 다음의 각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정
 - 1.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1년(신축·증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 2.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후 3년 이내에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적정한 심의 결과를 받지 못한 경우
 - 3.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중복 감면 배제

•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감면율

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

● 절차 및 제출서류

•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시장(특별시·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관련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84조, 시행령 제23조, 제126조, 제127조,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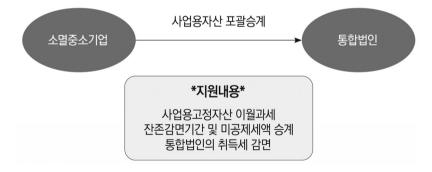
제6장 중소기업 재무개선 및 구조조정 지원

6-1 중소기업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고정자산을 통합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이월과세 및 취득세 감면, 소멸법인의 잔존기간에 대한 감면승계 및 미공제세액 승계

● 지원 대상

•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소멸되는 중소기업 및 통합법인



● 지원 요건

-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① 통합으로 소멸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통합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며 통합법인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고 사업의 동일성 유지
- ② 통합으로 소멸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통합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

③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의 사업을 승계하는 통합이 아닐 것

● 지원 내용

- 소멸되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던 사업용 고정자산(유형.무형자산)을 통합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 적용
-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통합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남은 감면기간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가능94)
- 통합법인은 소멸되는 중소기업의 미공제세액 승계 가능
-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통합법인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수한 해당 사업용 자산의 취득세 75% 감면

● 유의 사항

- 다음의 사유 발생 시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추징
 - ① 통합법인이 소멸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5년 이내에 폐지하는 경우
 - ② 통합으로 취득한 통합법인의 주식을 5년 이내에 50% 이상 처분하는 경우

● 절차 및 제출서류

- 법인세(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 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취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 관련 법령

- (법인세·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시행령 제28조, 시행령 제29조, 시행규칙 제15조
-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58조의3, 제183조, 제184조, 시행령 제126조, 제 127조, 시행규칙 제10조

● 용어 해설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소비성서비스업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호텔업 및 여관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단란주점 등 주점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 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
 - 기타 오락·유흥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이월과세 : 소멸되는 중소기업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통합법인에 양도하는 시점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를 양수한 통합법인이 해당자산을 양도할 때 소멸되는 중소기업자가 부담할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
- 과점주주 :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 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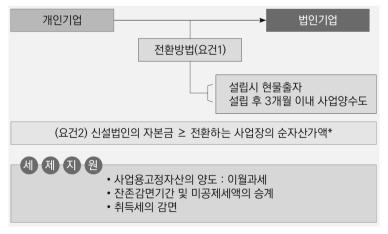
◉ 질문과 답변

- 질문 1. 임대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중소기업간 통합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신축하였습니다. 신축 후 건물 중 한 층은 분양하고 일부 면적은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 답변) 중소기업통합에 대한 세제지원의 입법취지는 중소기업의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해 볼 때 임대면적이 확대되어 통합 전 임대업 사용 면적을 유지 하면서 초과된 면적의 일부를 분양 또는 자가 사용하였다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 로 보아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6-2 법인전화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수·양도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및 취득세 감면, 소멸된 개인기업의 잔존기간에 대한 감면승계 및 미공제세액 승계

- 지원 대상 및 지원요건
- 소비성서비스업 이외의 업종으로 법인 전환한 소멸기업(거주자) 및 전환법인



- * 순자산가액 : 전환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서 사업관련부채(충당금 포함)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 지원 내용

- 소멸되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던 사업용고정자산(유형.무형자산)을 통합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 적용하나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에는 제외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신설법인은 소멸되는 개인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및 잔존감면기간 승계 가능
- 미공제세액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신설법인은 거주자의 미공제세액 승계
- 신설법인이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 의 취득세 75%경감하나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제외

● 유의 사항

-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의 사유 발생 시 사유발생일의 말일부터 2개월 이 내에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
 - ① 거주자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 ②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을 5년 이내에 50% 이상 처분하는 경우
-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자산(임대포함) 또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경감 받은 취득세를 추징

● 절차 및 제출서류

- 법인세(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 받고자 하는 경우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 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취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 관련 법령

- (법인세·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시행령 제29조, 시행규칙 제15조
-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58조의3, 제183조, 제184조, 시행령 제28조의 2 제126조, 제127조, 시행규칙 제10조

● 질문과 답변

- 질문 1 주택임대사업을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다 사업양수도의 방법으로 법인전환 하였습니다. 법인전 환 할 당시에는 그 출자가액이 소멸한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였지만 법인 설립 후 3 개월 내에 자본금을 증자하여 주택임대사업을 위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감 면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소멸하는 개인사 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

당 법인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입니다. 즉 개인 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출자가액은 법인설립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므로 법인설립당시에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였다면 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자하였더라도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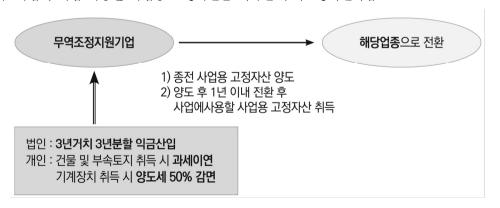
- 질문 2 저는 개인사업자로 양어장을 운영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양어장으로 사용하던 토지 및 건물을 현물출자 하였고,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을 놓쳐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양도소득세 를 신고하면서 이월과세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토지 건물에 대하여 이월과세 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 답변) 이월과세적용신청서의 기한 내 제출 규정은 납세자의 단순한 협력의무가 아닌 당해 과세연도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이월과세 적용여부를 납세자가 선택하도록 한 것이므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월과세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이월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6-3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무역조정지원기업이 업종전환을 위하여 종전 사업용 고정자산을 처분한 경우 개인은 양도소 득세의 감면 또는 과세이연, 법인은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지원 대상 및 지원요건

• 일정한 업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사업용고정자산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처분하고 1년 내에 전환 후 사업에 직접 사용할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한 무역조정지원기업



무역조정지원기업이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거 FTA 실행으로 인하여 기업이 심각한 피해(직전 연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매출액 또는 생산량 등이 10% 이상 감소)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경우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 해당 업종

"3-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업종 참조

● 지원 내용

• 법인인 경우

전환 전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다음 산식에 의해 산출된 과세이연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 하였다가 3년 거치 3년 분할로 익금산입 과세이연금액 = (전환 전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차익-이월결손금) ×(전환 후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금액/ 전환 전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

- 거주자(개인)인 경우
- ① 양도소득세 50% 감면

전환 전 사업의 사업장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양도가액으로 전환 후 사업의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경우 전환 전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다음 산식에 의하여 50% 세액감면 세액감면액 = (전환 전 사업장 건물 및 부속토지의 양도차익에 따른 산출세액) ×(전환 후 사업의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전환 전 사업양도가액)×50%

②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전환 전 사업의 양도가액으로 전환사업의 사업장 건물 및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과세이연 과세이연금액 = 양도차익×(전환 후 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부속토지 취득가액/전환 전 사업양도 가액)

● 유의 사항

- 사업전환을 하지 않거나 전환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1일: 0.025%)을 가산하여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로 납부
 - 법인 : 해당사유발생일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 시
 - 개인 : 해당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과세이연 받은 거주자가 전환사업의 사업장 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경우 과 세이연 받은 세액을 증여세 또는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로 납부

● 절차 및 제출서류

- 법인인 경우
- ①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과세이연신청서, 양도차익명세서,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사업전환(예정) 명세서, 사업전환완료보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거주자(개인)인 경우
- ① 과세이연 받고자 하는 경우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과세이연신청서와 사업전환(예정)명세서 제출
- ② 세액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제출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 시행령 제30조

● 용어 해설

• 과세이연: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으로 다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대체 취득한 경우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중 과세이연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신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할 때 신사업용고 정자산 등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

제7장 중소기업 지방이전 지원

7-1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수도 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소득세) 감면

◉ 지원 대상

-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3년(중소기업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기업이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동일한 업종을 유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해당 공장시 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일 것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신축 이전은 기존 공장의 양도·폐쇄일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
 - 중소기업 이외 기업이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로 이전하여야 함
 - 중소기업이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본사도 함께 이전하여야 함

• 제외 업종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중개업, 부동산매매업,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소비성서 비스업, 무점포판매 사업, 해운중개업

● 지원 내용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소득세)의 100% 감면, 그 다음 3년(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소득세)의 50% 감면
 -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구미시, 김해시, 아산시, 원주시, 익산시, 전주시, 제주시, 진주시, 창원시, 천안시, 청주시, 춘천시, 충주시, 포항시, 당진시, 음성군, 진천군, 홍천군(내면 제외), 횡성군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사후 관리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감면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

- ①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폐업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납부
- ② 공장을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 ③ 감면기간에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중소기업이 수도권 안으로 이전한 경우 공장 또는 본사)을 설치한 경우에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 ④ 이전일로부터 5년간 이전 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이전일 현재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사후관리 사유 발생 시 재산세액 및 종합부동산세액 추징
- ⑤ 감면 중소기업이 수도권 안으로 이전한 경우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 배제

● 제출 서류

•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시행령 제54조, 제60조

● 질문과 답변

수 있습니다.

- 질문 1.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던 중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조업기간 합산을 할 수 있습니까? 답변) 개인사업자가 대도시 안에서 영위하던 사업을 사업 양도·양수 등의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고 당해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사업자가 조업한 기간은 합산할
- 질문 2. 중소기업이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모두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까?
- 답변) 감면대상 공장은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을 수행하는 곳은 감면대상 공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공장등록 여부와는 별개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7-2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공장 등을 수도권 외 지역 이전시 법인세 감면

● 지원 대상

- 2022년 12월 31일112)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 전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유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할 것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본사 신축 이전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해야 함)
- 제외 업종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중개업, 부동산매매업,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소비성서 비스업, 무점포판매 사업, 해운중개업

● 지원 내용

- 본사 이전일 이후 본사이전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소득의 100% 감면, 그 다음 3년(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감면대상소득의 50%감면
 - *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구미시, 김해시, 아산시, 원주시, 익산시, 전주시, 제주시, 진주시, 창원시, 천안 시, 청주시, 춘천시, 충주시, 포항시, 당진시, 음성군, 진천군, 홍천군(내면 제외) 및 횡성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 감면대상 소득 : [① × ② × ③]

- ② 과세연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의 근무인원이 법인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 ③ 과세연도 전체 매출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뺀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 사후 관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면된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

추징 사유	납부할 세액
○ 본사 이전 후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 폐업하거	사업폐지일 또는 해산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
나 해산	감면세액
○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감
않는등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면세액
○ 본사 이전 후 수도권에 본사를 다시 설치하거나	
이전일부터 3년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본사업	기즈 시간에 기묘소를 드 나무별만 소그워서 다닌 시
무 총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 중 수도권안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날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
의 사무소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	내에 감면세액
시근무인원이 50% 이상인 경우	
○ 이전한 본사에 근무하는 임원수가 수도권의 본사	규정된 비율에 미달하게 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5
의 근무하는 임원수와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년 이내에 감면세액

● 제출 서류

•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시행령 제60조의 2

● 질문과 답변

- 질문 1.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을 신청하고 감면기간 경과 후 본사를 수도권으로 재이전하는 경우 감면세액을 다시 추정당하게 되는지요?
- 답변)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 안에 본사를 다시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문 2.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

는지요?

답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사를 두고 3년 이상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제조업을 추가 영위하는 경우, 이전 후 추가한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2011.7.21., 법률 제1089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7-3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대도시 공장시설 건물과 대지를 양도하고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차익 익금불산 입

● 지원 대상

-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대도시에 있는 공장 의 대지와 건물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한 다음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 ①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 ② 대도시공장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지방에서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 ③ 대도시공장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대도시의 범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부산광역시(기장군 제외)·대구광역시(달성군 제외)·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는 제외

공장의 범위 및 과세특례 적용범위

-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 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사업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
- 공장의 이전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하여야 함
- 다음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과세특례 규정 배제
 - 제조공장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공장입지 기준면적
 - 자동차정비공장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당해 사업의 등록 당시의 관계법령에 의한 최소기준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중 큰 면적

● 지원 내용

- 익금불산입 : 대도시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 익금불산
- 익금산입 : 익금불산입액은 대지와 건물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 산입

양도차익의 계산

= (양도가액 - 당해 공장의 장부가액 - 양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월결손금)

이월결손금이란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 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 사후 관리

• 익금불산입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지방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 또는 이전 후 사업개시일까지 이전계획서상 예정가액에 의한 익금 불산입액이 확정된 계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익금산업

● 절차 및 제출서류

•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토지 등 양도차익명세서, 이전완료 보고서 또 는 이전계획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시행령 제54조, 제56조,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

7-4 법인 본사 이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내국법 인의 경우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 지원 대상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다음에 해당하는 내국 법인
 -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②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 역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란「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

- ① 서울특별시
- ②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 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 ③ 의정부시
- ④ 구리시
- ⑤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도농동에 한함)
- ⑥ 하남시
- ⑦ 고양시
- ⑧ 수원시

- ⑨ 성남시
- 10 안양시
- ⑪ 부천시

- ⑫ 광명시
- (13) 과천시
- (14) 의왕시

- ①5 군포시
- ⑯시흥시(반월특수지역은 제외)

● 지원 내용

- 익금불산입 : 본점 또는 주사무소 대지와 건물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 익금산입 : 익금불산입액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산입

양도차익의 계산

= (양도가액 -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 - 양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월결손금)

이월결손금이란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 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 사후 관리

- 익금불산입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 도에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산입
 - ①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지 않는 경우
 - ②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의 50% 이상의 상시근무인 원이 근무하는 사무소를 둔 경우
 - ③ 대지와 건물을 처분한 대금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본사 대지와 건물의 취득 또는 임차, 본사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 외에 사용한 경우
 - ④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

● 제출 서류

•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토지등 양도차익명세서, 이전완료 보고서 또는

이전계획서, 처분대금사용계획서 또는 처분대금사용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 시행령 제57조

7-5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또는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 지원 대상

-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던 중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 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2 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동일한 산업단지 내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 * 신규공장 취득 후 2년 이내 기존공장 양도, 기존공장 양도 후 3년 이내 신규공장 취득

● 지원 내용

- 내국법인 :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산입
- 거 주 자 :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끝나는 날 이후 5년이 되는 날부터 5년의 기간 동안 규분한 금액 이상 분할납부

● 사후 관리

• 공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불산입액 전액 익금산입 또는 양도소득세 분할납부액 전액을 납부

● 제출 서류

•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양도차익명세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분할납부신청서, 이전(예정)명 세서 및 이전완료보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시행령 제79조의9

7-6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농공단지 등에 입주기업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감면

◉ 지원 대상

-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농공 단지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에 2021년 12월 31 일까지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내국인
- ② 2021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 원지역으로서 일정지역(나주 일반산업단지, 김제지평선 일반산업단지, 장흥해당 일반산업단지, 북 평 국가산업단지, 북평 일반산업단지, 나주혁신 일반산업단지, 강진환경 일반산업단지, 정읍 첨단 과학산업단지, 담양 일반산업단지, 대마 전기자동차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 지원 내용

-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 감면한도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누계액의 50% +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 1천5백만원

● 사후 관리

•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각 과세연도의 감면 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

● 제출 서류

•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시행령 제61조, 시행규칙 제25조

7-7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

- ◎ 농업회사법인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및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 물재배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 ◎ 농업인이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 농업인이 농업회사법인에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농지. 초지 제외)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 ◎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및 종합소득합산과세 배제

◉ 지원 대상

- 2021년 12월 31일 이전 식량작물재배업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 종사하는 「농 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 2021년 12월 31일 이전의 작물재배업 외의 부대사업등에 종사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농업인
-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회사법인에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 산(농지, 초지 제외)을 현물출자하는 농업인
-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초지 또는 부동산이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15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 포함)·군·구(자치구인 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

● 지원 내용

감면 대상	감면 내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 식량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	-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 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 식량작물
른 농업회사법인	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50억원 × (사업연
	도 개월 수÷12)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수
	입금액》한도
	- 축산업, 임업 발생 소득과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소득, 농산물 유통ㆍ
	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소득 :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사업개시 5
	년이 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 없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
	지 법인세의 50% 감면118)

○ 농업인이 농지 또는 초지	- 양도소득세 100% 세액감면(해당 농지 또는 초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
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	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자하는 경우	또는 초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
○ 농업인이 농업회사법인에	- 이월과세 적용 가능
농작물재배업·축산업 및	
임 업 에 직 접 사 용 되	
는 부동산(농지, 초지 제	
외)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 농업회사 법인에 출자한	-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 소득세 면제
거주자가 받는 배당소득	-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부대사업등 소
	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 종합소득합산과세 배제

● 사후 관리

• 농업인이 농지 등을 현물출자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 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이자상당가산액 납부

● 제출 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시행령 제63조, 시행령 제65조, 시행규칙 제26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

7-8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

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하는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재산세 감면,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등기·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면제

● 지원 대상

- ① 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 임차를 종료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② 대도시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

● 지원 내용

•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면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 면제 및 그 다음 3년간 재산세 50% 감면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 추징

- 법인을 이전하여 5년 이내에 법인이 해산된 경우(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와 법인을 이전하여 과세감면을 받고 있는 기간에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 는 법인을 다시 설치하는 경우
- ∘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대도시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그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 면제

● 중복 감면 배제

•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

● 절차 및 제출서류

•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시장(특별시·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관련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시행령 제39조, 시행규칙 제7조

8-9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재산세 면제 및 감면

● 지원 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

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감면되는 부동산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이 200㎡이상인 것을 말하는데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수익사업 사용 부분 제외)을 포함

● 지원 내용

• 공장을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 면제 및 그 다음 3년간 재산세 50% 감면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 추징

- · 공장을 이전하여 과세감면을 받고 있는 기간에 대도시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공 장을 다시 설치한 경우
- ·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중복 감면 배제

•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

● 절차 및 제출서류

•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시장(특별시·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관련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7-10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위기지역내 중소기업이 지정기간내 사업전환을 하면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

● 지원 대상

• 다음의 위기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에 속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

업

- 1.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고용위기지역
- 2.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지워 내용

• 지원대상 중소기업이 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기간 내에 사업전환을 위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고 사업전환계획 승인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전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경감,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과세기준일 현재 전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업전 환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 감면

감면된 취득세 추징

- ·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 ·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

● 관련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3, 시행령 제35조의3

제8장 중소기업 고용촉진 지원

8-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청년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지원 대상

•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 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동일한 중소기업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 재취업)에 취업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 1.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등의 병역 이행 기간은 6년을 한도로 연령계산에서 제외)
- 2. 60세 이상의 사람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 3.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2제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 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받은 사람
- 4. 경력단절여성 : 해당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동일한 업종 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경력단절 여성의 근로소득세가 원천 징수된 경우)한 후 다음의 사유로 퇴직하여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사람
 - 퇴직 1년 이내에 혼인한 경우(가족관계증명서)
 - 퇴직 2년 이내에 임신하거나 난임 시술을 받은 경우(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확인서)
 - 퇴직일 당시 임신한 상태인 경우(의료기관의 진단서)
 - 퇴직일 당시 8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업 종	비고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은 제외한다.
정보통신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부동산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 지원 내용

•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경력단절여성의 경우에는 재취업일)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70%(청년의 경우에는 90%) 감면(과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

감면기간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재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감면 가능

* 단, 청년으로서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 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까지 감면

● 절차 및 제출서류

•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을 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서와 근로자의 명단을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다만,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 신청 가능

●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29조의3, 시행령 제27조 제26조의3④, 시행규칙 제61조

8-2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상시근로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 고용유지 중소기업이란?
 - 1. 1인당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을 것
 - 2.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을 것
 - 3.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감소한 경우

● 지원 대상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 해당 과세연도의 임금총액을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의 근로시간 합계로 나눈 1인당 시간당 임금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와 비교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

우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임금총액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 위기지역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사업장에 대하여 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 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

위기 지역(기간 2021.1.1.~2021.12.31.)

울산광역시 동구, 전라북도 군산시,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통영시, 경상 남도 고성군

근로시간 합계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근로계약상 근로시간(「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의 함계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

-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기간이 1 년 이상인 자는 제외
- ∘ 「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 ·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직장가입자의 보 험료 등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인 근로자

● 지원 내용

• 기업의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법인) 또는 종합소득금액(개인) 에서 공제

세액공제금액 = ① + ② (각 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봄)

- ①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10%
- ②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105%) × 해당 과세연도 전체 상시근로자의 근로시간 합계 × 15%

• 상시근로자의 경우 :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1천만원 한도, 1천만원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근로소득공제금액 =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 간 임금총액)×50%

●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소득공제신청서에 고용유지의 내용,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간 합의를 증명하 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제출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3. 시행령 제27조의3. 시행규칙 제61조

9-3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고용증가 인원의 사회보험료를 고용이 증가한 중소기업의 법인세(소득세) 공제

● 지원 대상

•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 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중소기업

● 지원 내용

- 다음의 금액을 더한 금액(① + 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①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100%
 - ②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50% (신성장 서비스업 75%)

청년등 상시근로자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장교, 부사관 등의 병역 이행 기간은 6년을 한도로 연령계산에서 제외), 경력단절 여성(법 제29조의3제1항)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청년등 상시근로자가 아닌 상시근로자

사회보험

- ①「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 ②「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 ④「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 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신성장 서비스업

-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 또는 전기통신 어
- ·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오디오물 출파 및 원파 녹음업 또는 방송업
- 엔지니어링사업, 전문디자인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또는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연구개발업,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업(법 제6조③20조)
- 물류산업(법 제5조⑦)
-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
- 위의 법인세(소득세)를 공제받은 중소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①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 1.① 및 ②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 ② 2.① 외의 경우: 1.②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 중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이 5억 이하의 기업이 2020년 1월 1일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 중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근로자에 대해 신규 가입을 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50%를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절차 및 제출서류

•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시행령 제27조의4, 시행규칙 제61조

8-4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를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가 복직된 경우 인건비를 기업의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 지원 대상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를 고용한 경우, 그 근로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 이행 후 2020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킨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 병역 이행 후 1년 이내에 복직된 경우만 해당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를 졸업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

- ① 「병역법」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제24조·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 예비역 및 경비교도·전투경찰순경·의무소방원을 포함한다)
- ② 「병역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 ③ 「군인사법」제2조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 지원 내용

- 복직일로부터 2년 이내 지급한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 다음의 인건비는 제외
 -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 「소득세법 시행령 | 제40조의2 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및 「법인세법 시행령 | 제44조의2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 절차 및 제출서류

•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 복직 중소기업 세액공 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2, 시행령 제26조의2, 시행규칙 제61조

● 중소. 중견기업 비교

중소기업	중견기업
• 인건비의 30% 세액공제	• 인건비의 15% 세액공제

8-5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기간제 근로자등을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하는 경우 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공제

● 지원 대상

• 2020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하는 기업

● 지원 내용

-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에 1,000만원(중견기업 7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 (소득세)에서 세액공제
- 공제를 받은 자가 전환 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 공제 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인세)로 납부

● 절차 및 제출서류

•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2, 시행령 제27조의2, 시행규칙 제61조

● 중소, 중견기업 비교

중소기업	중견기업
• 정규직 전환 인원 당 1,000만원 공제	• 정규직 전환 인원 당 700만원 공제

8-6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 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관련 성과기금 설치 후 부담한 기여금을 손금 으로 인정

● 적용 대상 및 내용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 2에 따라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을 설치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손금으로 인정하고, 성과보상기 금의 공제사업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공제납입금 을 5년(중소기업 또는 중격기업이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여 만기까지 납 입한 후에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연계하여 납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합산하 여 5년) 이상 납입하고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부담한 기여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소 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되. 소득세의 50%(중견기업 30%) 세액 감면

● 성과보상기금

- 성과보상기금의 재원
 - ①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손금인정)
 - ②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이 납부하는 공제납입금
 - ③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차입금
 - ④ 성과보상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 ⑤ 중소기업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 성과보상기금의 용도
 - ①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
 - ②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의 직무역량 강화 및 전수를 위한 교육사업
 - ③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복지사업
 - ④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 ⑤ ① ~ ④ 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시행령 제26조의6.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5조의2~제35조의5

◎ 중소, 중견기업 비교

중소기업	중견기업
• 소득세의 50% 세액감면	• 소득세의 30% 세액감면

9-7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 공제

◉ 지원 대상

1. 경력단절여성과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 업

경력단절여성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을 의미함

- 1. 해당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 2. 결혼・임신・출산・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하였을 것
- 3. 퇴직일로부터 3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 4.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대표자)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관계가 아닐 것
- 2. 육아휴직복귀자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해당 과세연 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않은 기업

육아휴직복귀자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의미함

- 1.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이 육아휴직 복귀 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
-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경우로서 육아 휴직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일 것
- 3.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지원 내용

- 1. 경력단절여성
- 고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30% (중견기업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2. 육아휴직복귀자
- 복직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육아휴직 복귀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육아휴직 복 귀자의 자녀 1명당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적용)
- 법인세(소득세)를 공제받은 기업이 해당 기업에 복직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육아휴 직 복귀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 로 납부
 - * 다음의 인건비는 제외
 -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

● 절차 및 제출서류

•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시행령 제26조의3. 시행규칙 제61조

● 중소. 중견기업 비교

중소기업	중견기업
• 인건비의 30% 세액공제	• 인건비의 15% 세액공제

◉ 법령 비교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지원대상	○ 지원대상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중	중소기업에 신규취업 또는 재취업한 청년·장애
소 · 중견기업	인·60세 이상 근로자·경력단절여성
○ 지원내용	○ 지원내용
경력단절여성(육아휴직복귀자)을 고용(복귀)한	취업일 부터 3년이 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세의
날부터 2년(1년)이 되는 달까지 지급한 인건비의	70% 감면(과세기간별로 150만원 한도)
30% (15%) 세액공제	○절차 및 제출서류
○절차 및 제출서류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을 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경력단절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서와 명단을 신청 받은
여성 재고용 기업 세액공제신청서 제출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8-8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임금을 증가시킨 경우 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공제

1. 임금을 증가시킨 경우

- (1) 지원 대상
-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직전 3년 평균임금증가율의 평균을 초과하여 임금을 증가시킨 기업으로써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2) 지원 내용

• 원칙 :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5%(중견기업*의 경우 10%, 중소기업의 경우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임금증가분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1 + 직전 3년 증가율의 평균)]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중견기업

- · 매출액 :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
- ·제외업종 : 호텔업 및 여관업, 주점업 등 소비성서비스업(제29조제3항)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업종)
- ·독립성 :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 령」에 적합할 것(상 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 특례

- ① 상시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증가율 >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0.038)
- ②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③ 직전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가 아닐 경우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다음의 임금증가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음

임금증가분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1 + 0.038(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 직전 과세연 도 상시근로자 수

2.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는 경우

● 지원 대상

•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는 내국인으로서 해당 과세연 도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 지원 내용

•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5% (중견기업의 경우 10%, 중소기업의 경우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사후 관리

•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정규직 전환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 공제받은 법인세(소득세)를 추징

● 절차 및 제출서류

•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 시행령 제26조의4

● 중소, 중견기업 비교

중소기업 중겨기업

는 금 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에서 곳제

일정한 요건에 따라 ①과 ② 중 선택

- ① 임금증가분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1+직전 3년 증가율의 평균)]×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② 임금증가분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직전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1+0.038 (전 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20% 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 세(사업소득 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 세에서 공제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20%에 상당하 ○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10%에 상당하 는 금 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에서 공제

> 임금증가분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직 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1 + 직전 3년 증 가율의 평균)]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10% 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 세(사업소득 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 에서 공제

8-9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상시근로자를 증대시킨 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공제

● 지원대상

-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기업 다만, 소비성서비스업*은 제외
 - *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숙박업 제외) 주점업 및 단란주점업(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제외) 그 밖에 오락 ㆍ 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중복지원

이 법을 적용하는데 있어 다른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 가능, 다만, 제6조제7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 업에 대한 세액공제)을 동시 적용하지 아니함

상시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총 기간이 1년 이상은 제외)
- 단시간근로자(「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9호)
- ∘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 · 최대주주 등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및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
- ·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 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납부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 지원 내용

- 1. 아래의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①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청년등 상시근로 자)가 증가 시

소득공제금액 =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수를 한도) x 일정금액*

* 일정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 금액)

일반기업의 경우 400만원

중견기업의 경우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1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200만원

②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증가 시

소득공제금액 =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수를 한도) x 일정금액★

* 일정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제2호 금액)

일반기업의 경우 0원

중견기업의 경우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 2. 위 1.에 따라 공제받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아래의 금액을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공제

소득공제금액 = ①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 위 1. ②에 따라 공제 받은 금액 상당액

② 2.① 외의 경우 : 위 1. ②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상당액

◉ 사후 관리

-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청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 시,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 액추징
- 1.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 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 ①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이상인 경우:
 - 추가납부금액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인 인원수를 한도로 한다.)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 ② 그 밖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추가납부금액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를 한도로 한다) ×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이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이상시는 인원 수
- 나.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 추가납부금액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법 제29조의7 제1항제1호의 금액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 2.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 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 우
- 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 ①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이상인 경우: 다음의 계산 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추가납부금액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인 인원수를 한도로 한다.)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 ② 그 밖의 경우:

- 추가납부금액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 자의 감소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
- 나.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 추가납부금액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수를 한도로 한다) × (법 제29조의7 제1항제1호의 금액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한다.
- 절차 및 제출서류
-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27조제4항, 시행령 제26조의7

제9장 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

9-1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이 영위하던 가업을 상속인들이 승계할 수 있도록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

- ◉ 지원 대상
- 상속개시일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중소 · 중견기업의 가업을 상속 하는 경우

피상속인 요건

- 최대주주 등으로 지분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
- 10년 또는 가업경영 기간의 50%이상 대표자로 재직



상속인 요건

- 18세 이상 자녀 또는 그 배우자
- 2년 이상 가업에 종사
- 2년 이내 대표자로 취임

● 지원 요건

- 상속가업 요건
 - 피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유지 경영한 중소·중경기업
- 피상속인 요건
 - ① 지분 요건
 - 중소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로서 피상속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이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등의 50% (상장기업은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 ② 대표자 요건 (가업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
 - 100분의 50이상의 기간
 - 10년 이상의 기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 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 상속인 요건
 - ① 연령 요건 :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 ② 재직 요건 :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
 - ③ 대표자 요건 :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 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

● 지원 내용

- ①과 ② 중 작은 금액을 공제
 - ① 가업상속재산가액
 - ② 피상속인 경영 기간별 한도액 10년 이상 20년 미만 → 2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 → 300억원, 30년 이상 → 500억원

가업상속재산가액

- ① 개인기업 :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차감한 가액
- ② 법인기업: 가업에 해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 = 주식 등 가액 × (1 사업무관자산* / 법인총자산가 액)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에 열거된 자산
-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독립된 기업을 가업으로 영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전체 한도는 영위기간 이 가장 긴 기업의 가업상속공제를 한도로 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긴 기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부터 순차적으로 공제

● 사후관리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사유 발생 시 해당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을 사유발생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및 납부

- 가업용 자산의 20% (5년 이내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 공제받은 금액에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한 상속세 상당액
 - 주된 업종 변경과 관련하여 자산을 처분하고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등 제 외
- 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가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상속인 등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 주된 업종의 변경(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및 평가심의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받은 경우 제외) 또는 1년 이상 휴업, 무실적, 폐업한 경우
 - 상속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이나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
-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 조직변경 또는 유상증자 시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 등을 배정함에 따라 지분이 감소하였으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 해당 시 제외
-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80%에 미달하면서 총급여액이 기준총급여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매년판단)
-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일부터 7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에 미달하면서 7년간 총급여액 전체 평균이 기준총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 (7년 후 판단)
-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가업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행위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의 기간 중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① 과세표준과 세율 결정 전 형이 확정된 경우 : 가업상속공제 미적용
 - ② 가업상속공제 후 형이 확정된 경우 : 가업상속 공제 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과세 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

● 절차 및 제출서류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다음의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① 가업상속공제신고서
 - ② 가업상속 재산가액 명세서
 - ③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④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했음을 입증하는 서류

●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시행령 제15조, 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6조의 2, 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 용어 해설

- 중소기업 : 상속개시일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①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 ②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규모 기준 이내 이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 ③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 중견기업 : 상속개시일이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①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 ② 중소기업이 아니면서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에 적합할 것
 - ③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소득세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 최대주주 : 주주 등 1인과 특수관계인의 보유 주식 등을 합하여 그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 정규직 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근로자 및 1 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미납 근로자는 제외)
-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 :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정규직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
- 기준고용인원: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
- 총급여액 : 근로자(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6조의4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되, 기준고용인원 산정기간에 같은 호에 해당되는 사람만 있을 경우에는 포함한다)에게 지급한 소득 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
- 기준총급여액: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약				
	구 분	요 건 내 용		
	사후관리기간	7년 (2020년 이전 분은 10년 적용)		
	고용유지의무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 충족		
		① 매년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가 기준고용인원의 80% 이상		

	② 매년 총급여액이 기준 총급여액의 80% 이상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 충족
	① 7년간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가 기준고용인원 이상 (중견기업도 동일)
	② 7년간 총급여액 평균이 기준총급여액 이상
700700	•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정규직 근로자의 범위에 관한 규정은 2020년 개정이전
고용유지의무	공제분도 적용 가능
	• 추가된 총급여액 기준 및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기준고용인원 유지부분은 2020
	년개정이전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상속인에 대하여도 적용가능
	• 개정된 규정 적용 선택 시 전체 과세기간 또는 해당 사업연도분에 대해 동일하
	게 개정규정을 적용해야 함
업종유지의무	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및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거쳐 승인 받는 경우 중분류
합중규시의구 	외 변경도 허용 (사후관리 받고 있는 상속인도 적용)
	가업용 자산을 여러 번에 걸쳐 처분하는 경우 기존 추징분에 대해서는 차감하여
	계산(사후관리 받고 있는 상속인도 적용)
자산유지의무	주된 업종변경으로 기존 자산처분 후 대체 취득한 자산을 가업에 계속 사용하거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하는 경우 처분 허용 사
	유로 추가(사후관리 받고 있는 상속인도 적용)

9-2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특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의 경우 일반 상속세와 달리 일정한 거치기간을 허용하고, 분납 기간을 연장하여 가업승계를 지원

◉ 지원 대상

•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상당액

연부연납 특례 대상 상속세액 = 상속세 납부세액 × (가업상속재산가액-가업상속공제액) (총상속재산가액-가업상속공제액)

▶ 상속세 납부세액은 2천만원을 초과하여야 하며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 제출 및 납세담보 제공

● 지원 요건

- 상속가업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같은 영 제9조 제2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중견기업은 매출액 요건 없음)
- 피상속인 요건① 지분요건

5년이상 최대주주로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 등의 50% (상장법인 30%) 이상 계속 보유

② 대표자 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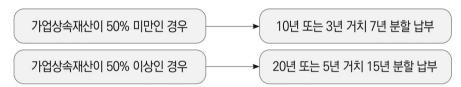
해당 기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로 해당 기업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

- 100분의 30 이상의 기간
- 5년 이상의 기간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중 3년 이상의 기간

• 상속인 요거

-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

● 지원 내용



● 유의 사항

-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만이 특례대상
- 매회 분할납부 세액은 1천만원을 초과해야함

● 사후관리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그에 따라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

-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국세징수법 제9조 1항에 따라 연부연납기한까지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
- 상속받은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상속인이 그 사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상속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처분
 -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 절차 및 제출서류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또는 결정통지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허가신청서를 관할세무서 장에게 제출

●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시행령 제67조, 시행령 제68조, 국세징수법 제9조

● 용어 해설

• 연부연납 : 조세의 일부를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으로, 조세를 장기간에 걸쳐 납부할 수 있는 제도

9-3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중소기업주식 사전상속특례)

경제 활성화 및 기업경영의 영속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법인 경영자가 생전에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사전상속)하여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및 특례세율 적용

● 지원 대상

•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중소 중견기업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증여

증여자 요건 수증자 요건 • 60세 이상 • 18세 이상 자녀 또는 그 배우자 1인 •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 경영 • 3월 이내 가업에 종사 • 최대주주 등으로 지분 50% 이상 소유 • 5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

● 지원 요건

- 증여자 요건
 - ① 연령 요건 : 60세 이상의 부모 (부모가 사망한 경우 조부모 포함)
 - ② 경영 요건 : 중소법인의 최대주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
 - ③ 지분 요건 : 해당 가업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 (상장법인 30%)이상 소유
- 수증자 요건
 - ① 연령 요건 : 18세 이상의 자녀 또는 그 배우자 1인
 - ② 재직 요건 : 증여받은 달로부터 3월 이내에 가업에 종사
 - ③ 대표자 요건 :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에 취임

● 지원 내용

- 특례 대상 증여재산가액 : 증여한 주식가액 × (1- 업무무관 자산가액 / 총 자산가액)
-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30억원까지 10%, 30억원 초과 시 20% 적용 (100억원 하도)
-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가업상속 요건 충족 시 상속세 부담 완화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50%(상장법인 30%)이상 10년 이상 계속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피상속인이 보유한 것으로 보아 적용

● 사후관리

증여 후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사유 발생 시 3개월 이내에 해당 증여세 및 이자상당 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납부

-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휴업 · 폐업하는 경우로 다음의 사유 포함
 - 수증자(수증자의 배우자 포함)가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포함)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 수증자가 최대주주에 해당하거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는 제외
 - 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 이 낮아지는 경우 포함
 -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처분 또는 유상증자 시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져 수증 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포함

● 유의 사항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중복적용배제
- 신고세액공제 및 연부연납제도 배제
- 가업의 주식을 받는 경우 기간과 관계없이 100억원 한도로 합산하여 정산

●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증여세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시행령 제27조의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시행령 제19조

제10장 조세특례의 제한 등

10-1 최저한세에 따른 감면 배제

최저한세 제도는 정책목적상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경우라도 세부담의 형평성, 국민개납, 재정확보 측면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최저한세율을 우대

● 지원 대상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

● 지원 내용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7%의 최저한세율을 적용
 - * 기업 규모별 최저한세 적용율

공제율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졸업 후	그 외 중견·대기업		
	공제율 중소기업	1~3년	4~5년	과표 100억이하	과표 100억~1천억원	과표 1천억이상	
	최저한세	7%	8%	9%	10%	12%	17%

최저한세란?

- 의의 : 기업이 조세감면을 적용받더라도 국가가 정한 최저한의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 액에 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을 배제하고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
- 최저한세 대상 법인세 :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최저한세 적용 제외 대상
 - 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
 - ②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 ③ 외국법인의 지점세(「법인세법」 제96조)
 - ④ 가산세, 조세감면 등의 사후관리에 따라 추징·납부하는 감면세액·이자상당가산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제1항)
 - ⑤ 최저한세 적용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은 세액공제 등(「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제2항)
- · 최저한세 대상 과세표준 :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소득공제,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 ∘ 법인이 부담할 법인세 : Max [①, ②]
 - ① 최저한세 대상 과세표준×7%(일반기업 8%~17%)
 - ② 조세감면 후 법인세액

● 주요 적용대상

구분		조세특례제한법	감면내용
	6-2	제10조의 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_	3-2	제13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소득공제	3-6	제14조	창투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손금산입	5-8	제28조의 3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익금불산입	8-3	제60조 제2항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비과세금액	8-4	제61조 제3항	법인 본사 이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1 1 1 1	8-1	제63조 제4항	기업의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차익 과세특례
	8-2	제63조의 2 제4항	법인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차익 과세특례
	5-2	제5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4-3	제7조의 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6-1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중소기업 제외)
	6-3	제12조 제2항	특허권 등 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6-5	제12조의 3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6-6	제12조의 4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3-3	제13조의 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3-4	제13조의 3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에 공동투자시 세액공제
	5-1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5-3	제25조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5-4	제25조의 5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세액공제	5-6	제25조의 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5-5	제25조의 7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0 4	제29조의 2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를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
	9-4		제
	9-7	제29조의 3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9-8	제29조의 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9-9	제29조의 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9-5	제30조의 2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9-2	제30조의 3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9-3	제30조의 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7-1	제31조 제6항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따른 미공제 세액 승계
	7-2	제32조 제4항	법인전환에 따른 미공제 세액 승계
	3-1	케스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1항, 제6항의 100% 감면과
	3-1	제6조	제7항 추가 감면분 제외)
	4-1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6-3	제12조 제1 · 3항	기술이전 및 기술 대여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C 4	-1)10-7 A) 0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11 A 3	6-4	제12조의 2	(100% 감면 제외)
법인세 면제	7-1	제31조 제4·5항	중소기업 간의 통합할 경우 잔존 감면기간 세액감면 적용
세액감면	7-2	제32조 제4항	법인전환에 대한 잔존 감면기간 세액감면 적용
	0.4	1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8-1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외)
	8-6	제64조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
	8-7	제68주	는 소득 제외)
			<u></u>

◉ 최저한세로 배제되는 감면 공제의 적용순서

-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이 배제되는 경우 납세자가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지만, 과 세관청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순서(동일한 호안에서는 법 제132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에 열거된 조문순서에 의한다)에 따라 감면을 배제
 - ① 법 제13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② 법 제132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이 경우 동일 조 문에 의한 감면세액 중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발생한 것부터 적용배제
 - ③ 법 제13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 ④ 법 제13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 및 비과세
- 최저한세가 적용 되는 감면과 그 밖의 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 면을 먼저 적용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시행령 제126조

10-2 중복지원의 배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원이 중복적으로 적용됨으로써 발생하는 과다한 조세지원을 적절하게 조절하기 위하여 동일 내용에 대한 중복지원을 배제

① 동일 자산에 대하여 아래 투자세액공제 중복적용이 불가하고, 여러 가지 자산을 투자한 경우에는 투자한 자산별로 각각 투자세액공제를 달리 적용 가능

구 분	조세특례제한법	조 세 지 원
5-2	제5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5-1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5-3	제25조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5-4	제25조의 5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5-5	제25조의 7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② 내국법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다음의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은 상호 중복 공제를 배제

■ 세액공제

구 분	조세특례제한법	조 세 지 원
5-2	제5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3-3	제13조의 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5-1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5-3	제25조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5-4	제25조의 5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5-6	제25조의 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5-5	제25조의 7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9-3	제30조의 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는 중복적용 가능)

■ 세액감면

구 분	조세특례제한법	조 세 지 원
3-1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4 - 1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6-4	제12조의 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7-1	제31조 제4·5항	중소기업 간의 통합할 경우 잔존 감면기간 세액감면 적용
7-2	제32조 제4항	법인전환에 대한 잔존 감면기간 세액감면 적용
8-1	제63조 제1항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8-2	제63조의 2 제1항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8-6	제64조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8-7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4-8	제85조의 6제1·2항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4-9	세00소의 0세1 · 2양	사외식기집 및 경에인 표군사합경에 대한 법인제 등의 검면
5-7	제104조의 24 제1항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7항(고용증가에 따른 추가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함
- ③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과세연도에 다음에 해당하는 세액감면규정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

구 분	조세특례제한법	조 세 지 원
3-1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4 - 1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6-4	제12조의 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7 - 1	제31조 제4·5항	중소기업 간의 통합할 경우 잔존 감면기간 세액감면 적용
7-2	제32조 제4항	법인전환에 대한 잔존 감면기간 세액감면 적용
8-1	제63조 제1항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8-2	제63조의 2 제1항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8-6	제64조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4-8	레이트로 이 유래 그 이렇는	기취거기어 미 자세이 포즈기어자세 미치 버이게 드이 가머
4-9	제85조의 6제1·2항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5-7	제104조의 24 제1항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10-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산업시설 및 기업활동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고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 대하여 일부 조세감면 적용 배제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증설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 조세감면 배제 대상
 -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국인
 - ②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 포함)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
 - ☞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 제3항의 지구단 위계획구역 중 산업시설의 입지로 이용되는 구역 안에서 증설투자하는 경우는 감면 적용
- 조세감면 배제 자산
 -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공장의 경우 : 사업용고정 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해당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 ☞ 해당 공장의 연면적이란?
 - 공장부지면적 또는 공장부지 안에 있는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 다만, 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 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의 면적과 대피소·무기고·탄약고 및 교육시설의 면적은 제외
 - ② 공장외의 사업장인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해당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 ☞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란?
 기계장치 등 사업용고정자산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를 말함
- 조세감면 적용 자산(예외)
 - ① 디지털방송장비와 정보통신장비
 - ② 연구·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 ③ 에너지절약시설
 - ④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
 - ⑤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 조세감면 배제 대상 투자세액공제

구분	투자세액공제 유형	조세 특례제 한법	배제대상 자산
5-1	① 통합투자세액공제	제24조	조세감면 적용 자산을 제외한 모든 자산
5-2	②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제5조 제1항 제1,2호	사업용자산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

5-3	③ 특정 시설 투자 등에	제25조	- 소방시설과 소방관련 물품
	대한 세액공제	1항5호(라목,바목,아목 은	- 산업재해 예방시설
		제외하며 1990년 이후 중	- 광산안전시설
		소기업 등이 투자한 경우만	- 위해요소 방지시설
		해당)	- 공정개선 및 자동화 시설
		- 1항6호(다목은 제외)	- 첨단기술시설
5-4	④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제25조의5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		
	액공제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사업장 설치 후 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 조세감면 배제 대상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 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 아닌 자

- 조세감면 배제 자산 :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
- 조세감면 적용 자산(예외)
 - ① 디지털방송장비와 정보통신장비
 - ② 연구·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 ③ 에너지절약시설
 - ④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
 - ⑤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 조세감면 배제 대상 투자세액공제

구분	투자세액공제 유형	조세특례제한법	배제대상 자산
	① 통합투자세액공제	제24조	조세감면 적용 자산을 제외한 모든
			자산
5-3	②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u> </u> 제25조	- 소방시설과 소방관련 물품
	세액공제	- 1항5호(라목,바목,아목 은	- 산업재해 예방시설
		제외)	- 광산안전시설
		- 1항6호(다목은 제외)	- 위해요소 방지시설
			- 공정개선 및 자동화 시설
			- 첨단기술시설
5-4	③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제25조의5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시행령 제124조, 시행규칙 제53조, 제54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판단〉

구 분	1990.1.1. 이후 사업개시		1989.12.31. 이전 사업개시	
7 -	증설투자	대체투자	증설투자	대체투자
일반기업	X	0	X	
중소기업	X (산업단지·공업지역 O)	0	(산업단지·공업지역 O)	0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 서울특별시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
과밀	당 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억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 만
권역	해당)
	○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은 제외]
	○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 남양주시(별내동, 와부읍, 진접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읍 및 오남읍만 해당)
	○용인시(신갈동, 하갈동, 영덕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지곡동, 공세동, 고매동, 농서동, 서천
	동, 언남동, 청덕동, 마북동, 동백동, 중동, 상하동, 보정동, 풍덕천동, 신봉동, 죽전동, 동천동, 고
	기동, 상현동, 성복동, 남사면, 이동면 및 원삼면 목신리·죽릉리·학일리·독성리·고당리·문촌
	리만 해당)
성장	○ 연천군 ●포천시 ●양주시 ●김포시 ●화성시
관리	○ 안성시(가사동, 가현동, 명륜동, 숭인동, 봉남동, 구포동, 동본동, 영동, 봉산동, 성남동, 창전 동,
권역	낙원동, 옥천동, 현수동, 발화동, 옥산동, 석정동, 서인동, 인지동, 아양동, 신흥동, 도기동, 계동,
	중리동, 사곡동, 금석동, 당왕동, 신모산동, 신소현동, 신건지동, 금산동, 연지동, 대천동, 대덕면,
	미양면, 공도읍, 원곡면,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양성면, 고삼면, 죽산면 두교리·당목 리·칠장
	리 및 삼죽면 마전리·미장리·진촌리·기솔리·내강리만 해당)
	○ 인천광역시 중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
	동·원 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 시흥시 중 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
	○ 이천시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만 해당)
자연	○용인시(김량장동, 남동, 역북동, 삼가동, 유방동, 고림동,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포곡 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만 해당)
보전	○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광주시
권역	○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죽산리·용설리·장계리·매산리·장릉리·장원리·두현리 및 삼죽면 용
	월 리·덕산리·율곡리·내장리·배태리만 해당)

